

신 대 식 의 상 속 수 업



상속설계의 기술

상 속 사 용 설 명 서

상속·증여, 알면 지키고 모르면 잃는다

신대식 · 申大湜

Syn Dae Sik

AFPK | RC · Estate & Gift Planning Specialist

HEIRWISE

www.finitart.com

◇ 신대식의 상속수업 ◇

상속설계의 기술

상속사용설명서

신대식 · 申大湜 · Syn Dae Sik

AFPK | RC · Estate & Gift Planning Specialist · 한국재무설계(주)

HEIRWISE · www.finitart.com

獻 呈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님과
생존해 계신 어머니 **윤관음성** 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머리말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섰다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고, 누가 1분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남은 가족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예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단지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상속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가족에게 가장 무겁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이 상속을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계산의 출발선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라는 법과 세금의 구조 위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평생 일군 재산이 세금과 다툼으로 흩어지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고 딱딱한 법전을 풀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상속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내합니다. 각 장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서 출발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짚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과 세금 체크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법령과 세율은 시행일을 명시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읽다가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얼마일까?"가 궁금해지면, 책 곳곳의 QR코드로 연결되는 www.finitart.com 상속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상속 설계는 빠를수록, 그리고 한 걸음 먼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HeirWise 신대식 (Syn Dae Sik)

일러두기

- ▶ 본서의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기준일은 각 장에 표기했습니다.
- ▶ 세법 수치는 현행 확정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최고세율 50%·5단계 누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한때 발의된 최고세율 40% 인하·자녀공제 5억 확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등 미시행 개정안은 별도로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 ▶ 본문에 등장하는 신해남·허미향·신영재·신연선 가족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인물이며, 모든 금액은 가정입니다.
- ▶ 각 장의 박스는 관련 법령·판례(파란색), 실전 팁(노란색), 세금 체크(초록색)로 구분됩니다.
- ▶ 본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액·법률 판단은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 내 상황의 상속 개시·상속인 확정·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QR 또는 www.finitart.com 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www.finitart.com 상속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설계의 기술 — 상속사용 설명서》

텍스트 정리: 신대식(Syn Dae Sik) |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발행:
HeirWise

목차

PART 1

누가, 얼마를 받는가

1장.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	1
2장.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	6
3장. 내 돈인가, 물려받은 돈인가	13
4장. 누가 얼마를 받는가	17
5장. 먼저 받은 사람, 더 기여한 사람	21
6장. 아무리 유연해도 지켜지는 최소한의 몫	25
7장. 유연 — 살아 있을 때 쓰는 마지막 설계도	31
8장.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승인과 포기의 기술	36
9장. 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39

PART 2

세금과 절세

10장.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는가	42
11장. 사전증여 — 상속세를 줄이는 시간의 전략	47
12장. 의도하지 않은 증여 — 세법이 보는 증여의 범위	50
13장. 10년 단위의 증여 설계	53
14장.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56
15장. 보험으로 상속세 자원 만들기	59

PART 3

도구와 구조

16장. 신탁 — 내 뜻대로 물려주는 도구	62
17장. 장애인 신탁 — 남겨질 아이를 위한 준비	65
18장. 이월과세 — 법인전환의 세금 장벽 넘기	68
19장. 가족법인 — 부를 옮기는 그릇, 그리고 함정	71
20장. 차등배당 — 배당으로 부를 옮길 때의 경계선	74
21장. 법인 vs 개인 — 어느 그릇이 유리한가	77

PART 4

판례로 배우는 상속

22장. 상속인과 대습상속 — 법원이 답한 쟁점들	80
23장. 유류분과 유언 — 가족 갈등의 최전선	83
24장. 분할과 기여, 법원이 정한 공평의 기준	86

PART 5

실전

25장. 상속 설계 5단계 프로세스	89
26장. 종합 계산 사례 — 신해남 가족의 상속	92
27장. 상속 계산기	95
28장. 상속, 이것만은 꼭 — 핵심 10가지	96
29장. 지금 시작하는 상속 설계	99
30장. 남겨진 가족을 위한 안내	101

부록

바로 쓰는 자료

부록 A. 상속 설계 체크리스트	104
부록 B. 세율표·공제한도 총정리	106
부록 C. 법령 개정 연표 (2024~2026)	109
부록 D. 핵심 용어집	111
부록 E. 상담 준비 양식	113

PART 1

누가, 얼마를 받는가 — 상속을 지배하는 법(法)

1장 상속의 시작 · 2장 상속인 · 3장 상속재산 · 4장 법정상속분 · 5장 특별수익·기여분
6장 유류분 · 7장 유언 · 8장 승인과 포기 · 9장 재산분할

CHAPTER 1

1장.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

— 사망·동시사망·실종선고, 1분의 차이가 수익을 바꾼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고,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은 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몇 달 뒤 전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는다. 남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아내 쪽 가족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답은 단 하나, '누가 1분 먼저 사망했는가'에 있었다.

상속은 이렇게 시작된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 위에서, 때로는 1분이 수익 원을 가른다. 많은 사람이 상속을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계산의 출발선은 '언제, 어떻게 상속이 시작되었는가'이다. 출발선이 어긋나면 그 위에 쌓는 모든 계획이 흔들린다. 이 장은 그 출발점을 정확히 짚는다.

1.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된다

법은 의외로 간결하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법전 전체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조문이다. 이 한 줄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상속은 없다. 의식이 없든, 식물인간 상태든, 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속은 시작되지 않는다. 뇌사의 경우, 우리 법은 장기 기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장과 호흡이 멎은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사망신고와 사망 그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날'에 개시된다. 사망신고는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일 뿐이다. 신고가 늦어져도 상속은 사망 시점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또한 상속은 **상속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그 순간 당연히 발생한다. 멀리 떨어져 사망 소식을 며칠 뒤에 들었더라도, 상속은 사망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로 기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 '두 글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 몇 시 몇 분에 사망했는지, 둘이 동시에 사망했는지, 사라진 사람을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이 변수들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완전히 뒤바꾼다.

2.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나 — 준거법

요즘은 가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부모가 해외

에 부동산·예금을 둔 경우다. 이때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가"부터 정해야 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국제사법 제49조(상속)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이중국적자 중 하나가 대한민
국 국적이면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어디에 있든,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국 민
법으로 나눈다. 반대로 미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도 원칙
적으로 미국 상속법을 적용한다. 미국은 주(州)마다 상속법이 다르고, 유언검인(probate)이라
는 별도 절차가 있어 한국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거나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민법으로 나눈다. 그러나 세금은 별개다. 피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고, 해외 자산이 있으면 그 나라가
또 상속세(예: 미국 Estate Tax)를 매길 수 있다.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될 위험이 있어,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 해외 자산·해외 가족이 있다면 상속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이다.

3. 사망 시각 — 1분이 수역을 바꾼다

사망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일시로 증명된다. 24시간제로 기록된 그 시각이 상속개
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분 단위 시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바로 그 순간에 살아 있어야 상속인이 된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 한다. 단 몇 분 차이로 상속인이 되기도, 못 되기도 한다.

둘째, 재산의 평가 시점이 정해진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라면, 평가 기준일이 곧
세금의 크기를 좌우한다.

셋째, 모든 기간이 그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 상속 승인·포기(3개월), 유류분반환청구(안 날부
터 1년),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가 전부 사망일을 기점으로 계산된다. 이 시계는 슬픔을 기다
려주지 않는다.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른다.

4. 동시사망의 추정 — 순서를 알 수 없을 때

서두의 부부 사례로 돌아가 보자. 같은 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했는데 순서를 알 수 없다. 법은 이
렇게 정리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림 1-1]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분 비교

이 원칙이 왜 수익을 가르는지 사례로 보자. 신해남(72세)과 배우자 허미향(68세)에게 자녀가 없고, 신해남에게는 형제가, 허미향에게는 친정 가족이 있다고 하자. 신해남 명의 재산이 20억 원이다.

만약 신해남이 1분 먼저 사망했다면, 그 20억은 일단 배우자인 허미향에게 상속되고, 곧이어 허미향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은 허미향의 친정 가족에게 넘어간다. 신해남의 형제는 한 톨도 받지 못한다. 반대로 허미향이 먼저였다면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그런데 순서를 알 수 없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없어 각자의 재산이 각자의 혈족에게 돌아간다. 1분, 혹은 '알 수 없음'이 가문의 재산 흐름을 통째로 바꾼다.

한 가지 더. 동시사망이라도 그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제1001조)이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했다더라도, 아들의 자녀(손자녀)는 아들을 대신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그 아래 세대까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5. 실종선고 — 예상 밖의 사망일

사람이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27조·제28조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특별실종(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은 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된 날도, 법원이 선고한 날도 아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그림 1-2] 실종선고 사망일 타임라인

이 날짜가 왜 중요한가. 그 사이에 다른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새로 태어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사이 이미 나눠진 재산은, 선의로 받은 부분은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제29조). 실종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속의 출발선을 다시 굽고 되돌릴 수도 있는 사건이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사망 시각이 분 단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부나 부자(父子)가 같은 사고를 당하면, 누가 먼저였느냐에 따라 재산이 처가로, 시가로, 혹은 자녀에게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의 정확한 시각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걱정된다면, 생전에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 첫째,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순서와 무관하게" 재산이 흐를 길을 정해두는 것. 둘째, 보험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가므로, 사망 순서 다툼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장의 정리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제997조). 한국 국적자는 한국 민법을 따르되 해외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국제사법 제49조). 사망 시각은 상속인의 범위, 재산 평가, 모든 기간의 출발점을 좌우한다. 순서를 알 수 없으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 서로 상속하지 못하지만(제30조), 그 아래 세대의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제1001조). 실종선고의 사망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다(제27·28조).

상속의 시작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 구성·국적·사고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자녀 없는 부부, 해외에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사고를 함께 겪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발선 설계만으로도 재산의 향방이 바뀐다. 내 가족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혼자 추측하기보다 한 번 함께 짚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 내 상황의 상속 개시·상속인 확정이 궁금하다면 www.finitart.com 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

2장.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

— 상속 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구하라법까지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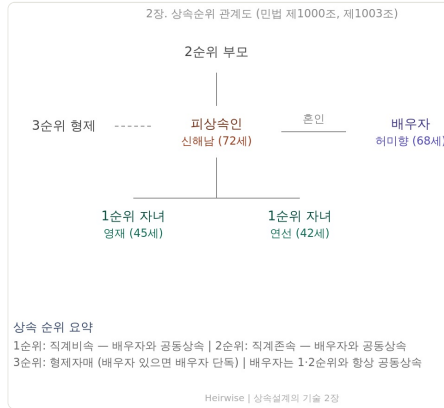
"새아빠 재산도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머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잖아?" — 모두 틀렸다. 입양하지 않으면 새아빠 재산은 한 톨도 못 받고, 머느리는 시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되고,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먼저 사망한 자녀 대신 누가 상속받는지 정리한다.

1. 상속의 순위 — 네 줄로 정해진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4개의 순위로 나누어 놓았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한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3순위	형제자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특별	배우자 —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민법 제1003조



[그림 2-1] 상속인의 순위 관계도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배우자 — 혼인신고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를 말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표시된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다음 경우에도 모두 상속인이 된다.

- ▶ 결혼식을 안 올렸더라도
- ▶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더라도
- ▶ 줄혼 선언을 했더라도
- ▶ 사망 하루 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 ▶ 재혼이더라도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도 **혼인신고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할 때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을 여러 번 접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이혼신고, 재판확정, 조정성립)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면, 오히려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혼 절차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직계비속 — 자녀가 상속 1순위다

가.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표시된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 최대 4명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성과 본도 양부모의 것으로 바뀐다.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므로, 친부모 쪽으로부터는 상속받지 못한다.

친부모 관계	유지	종료
친부모 상속	가능 (양부모+친부모 모두)	불가
성과 본	변경 안 됨	양부모 성·본으로 변경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친부모 모두에 등재	양부모에만 등재

나. 새아빠·새엄마의 재산을 받으려면

재혼하면서 기존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새아빠 또는 새엄마가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자녀의 성을 바꾸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려도 마찬가지다. 입양만이 상속권을 만든다.

다. 태아·혼인의 출생자·친생부인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유증을 받을 권리도 가진다. 다만 사산·유산·낙태로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이 권리들은 소멸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도 아버지가 인지(임의 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친생자녀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직계존속·형제자매·방계혈족

가. 직계존속 (2순위)

1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때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도 없으면 조부모가 된다.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며, 사위에게 장인·장모도 직계존속이 아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재무가 많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면 할머니가 손자의 빚을 떠안는 결과가 된다.

나. 형제자매 (3순위)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후, 형제자매의 상속권 자체도 없어졌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과 대습상속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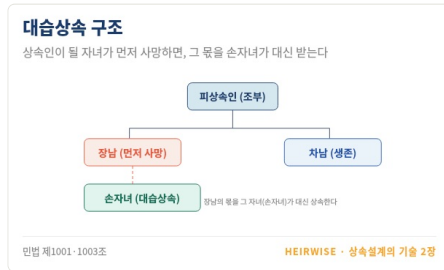
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순위)

백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평생 본 적 없는 사촌, 고종사촌, 이중사촌도 앞 순위가 모두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5.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자녀 대신 누가 상속받는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민법 제1001조).

거거 조문: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그림 2-2] 대습상속 구조도

대습상속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첫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습할 수 없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살아 있으면서 포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된다. 바람난 사위도 처가 재산을 대

습상속받고, 애인이 생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다만 재혼하면 대습상속 자격을 잃는다.

셋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부 등)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형수·제수·올케 등이 3순위 대습상속인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넷째,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제한된다. 2026.3.17. 시행된 민법 제1003조 개정으로, 제1004조(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 설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놀라는 분이 며느리·사위다. '시부모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또는 '처가 재산이 나한테 온다고요?' — 먼저 사망한 배우자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혼하면 대습상속 자격을 잃으므로, 재혼 시점과 시부모·장인 사망 시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상속결격 — 상속에서 가장 강력한 징벌

피상속인 등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 자격이 박탈된다(민법 제1004조). 이를 상속결격이라 한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재산도, 유증도, 기여분도, 유류분도 받을 수 없다.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1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선순위·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미수도 포함
2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해치사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의'가 요건이다. 자녀가 주차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용서하더라도 결격의 효과는 풀리지 않는다.

셋째, 결격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악행을 저지른 본인은 배제되지만, 그 가족은 보호된다.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울 걱정과 낙태를 한 사례가 있다. 시부모가 '상속의 동순위자인 태아를 살해했다'며 상속결격권을 주장했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민법 제1000조 제3항)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상속권 상실 신고 — 통칭 '구하라법'

어린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면서 도입된 제도다(민법 제1004조의2, 2024.9.20. 신설, 2026.1.1. 시행).

1차 개정 (2026.1.1. 시행) — 직계존속만 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차 개정 (2026.3.17. 시행) — 전(全) 상속인으로 확대

2026.3.17.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0615호)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 1차 개정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대상이었지만, 2차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누구든 때론 행위를 했다면 상속권 상실 신고의 대상이 된다.

둘째, 부양의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1차 개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했으나, 2차 개정으로 미성년 한정이 삭제되어 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도 사유가 된다.

셋째, 상속결격·상속권상실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이 제한된다(제1003조 개정). 때론 상속인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재산을 향유하는 것을 차단했다.

상속결격이 '당연 박탈'이라면, 구하라법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청구 기한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적용 시점: 상속권 상실 신고 규정은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구하라법이 적용되면 상속권이 상실되고 유류분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수익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대신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장의 정리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배우자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혼인신고 필수	민법 제1003조
일반양자	친부모+양부모 모두 상속 가능 (최대 4명의 부모)	—
친양자	친부모 관계 종료 → 양부모만 상속	—
대습상속	상속인이 사망·결격 시 그 자녀·배우자가 대신 상속	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 시	손자녀 대습 불가 (포기 ≠ 사망)	—
상속결격	5가지 사유 → 당연 박탈, 피상속인 용서해도 불가	민법 제1004조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	패륜 행위 상속인 → 법원 선고로 상속권 상실. 2026.3.17.부터 모든 상속인 대상	민법 제1004조의2
대습상속 제한	상속결격·상속권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2026.3.17. 시행)	민법 제1003조
2023 전원합의체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손자녀 불가)	2020그4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해보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상 → 유튜브 [신대식의 상속수업] | 상담 → finitart.com

면책 문구

이 책은 상속·증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세무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설계 상담: Heirwise (finitart.com) | 저자: Syn Dae Sik (AFPK 재무설계사)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3

3장. 내 돈인가, 물려받은 돈인가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한 곳 차이가 수익을 가른다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한 부인이 있었다. 남편 앞으로 빚이 꽤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며 급한 마음에 남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비와 밀린 카드값을 정리했다. 몇 달 뒤,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사모님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셨으니, 빚도 전부 떠안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받은 사망보험금 3억은 한 톨도 못 건드릴 줄 알았는데, 그건 오히려 그녀의 것으로 온전히 안전했다. 무엇을 손대도 되고 무엇을 손대면 안 되는지 — 이 구분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갈랐다.

사람이 사망하면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온다. 보험금, 연금, 퇴직금, 공제회 급여. 이것들이 전부 상속재산은 아니다. 어떤 돈은 '물려받는 돈'이고, 어떤 돈은 '원래 내 돈'이다. 이 구분은 특히 빚이 많을 때 생사를 가른다. 잘못 손대면 빚을 떠안고, 제대로 알면 가족의 생계를 지킨다.

1. 상속재산의 범위 — 빚도 함께 온다

먼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정해야 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뿐 아니라 빚(채무)도 포함된다.

핵심은 '포괄적'이라는 단어다. 좋은 것만 골라 받을 수 없다. 신해남(72세)이 사망하며 빌딩 한 채, 아파트, 예금, 그리고 은행 대출금과 보증채무를 남겼다면, 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상속된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묶여 넘어오는 것, 그것이 상속재산의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된다. 빚이 그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한 것이 보증채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한참 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청구된다. 상속재산을 파악할 때 '숨은 빚'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2. 보험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서두의 부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이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자에게서 직접 받는 것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실질적 의미가 있다.

첫째,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빚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빚은 떠안지 않으면서 보험금은 챙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둘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보험금에 손대지 못한다. "남편 빚을 그 보험금으로 갚으라"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보험금은 남은 가족을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만 가족 내부에서는 더 받은 셈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눌 때 보험금은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유류분 계산에도 들어올 수 있다. '채권자에게는 안전하지만, 형제 사이에서는 고려 대상'인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림 3-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구분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여기서 가장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진다. 민법의 답과 세법의 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상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즉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별도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민법과 세법을 같은 잣대로 보면 신고에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것과 별개로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안심하고 받아도 되는 돈

보험금 외에도 '내 돈'으로 분류되어 안전한 것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 등은 각 특별법에 따라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다.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건드리지 못한다. 퇴직연금(DB·DC·IRP)의 사망급여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 돈들의 공통점은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이다. 그래서 법이 채권자로부터 두텁게 보호한다. 남편이 빚을 남겼더라도, 유족연금과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살아갈 토대가 된다.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이 구분을 알면 상당 부분 사라진다.

4. 함부로 손대면 위험한 돈

이제 서두의 부인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분명해진다. 그녀는 '손대면 안 되는 돈'에 손을 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부
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까지 전부 떠안는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은 "상속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 순간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길이 막힌다. 빚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이것이다.

다만 모든 행위가 처분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장례비 지출이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해 다툼이 잦으므로, 빚이 의심되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빚이 의심되는 상속의 제1원칙은 단순하다. "확실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① 받아도 되는 돈(보험금·유족연금·퇴직연금)과 손대면 안 되는 돈(피상속인 예금·부동산)을 먼저 구분한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 특히 숨은 보증채무까지 조회한다. ③ 빚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동결한다. ④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정승인(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받을 길이 남아 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서두의 비극은 피할 수 있다.

이 장의 정리

상속재산에는 자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제1005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퇴직연금은 수익자·유족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제8조).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상속재산에 함부로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된다(제1026조), 받아도 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글로 읽으면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통장·보험·연금·부동산·보증채무가 뒤섞여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장례 직후의 경황없는 시기에 잘못 손대면 돌이킬 수 없다. 빚이 걱정되는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손대기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길이다.

▶ 받아도 되는 돈과 손대면 안 되는 돈의 구분이 헷갈린다면 www.finitart.com 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4

4장. 누가 얼마를 받는가

— 법이 정한 몫, 법정상속분

명절에 모인 형제들이 얼굴을 붉혔다. "장남인 내가 제사도 모시는데 당연히 더 받아야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떠난 집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답은 감정이 아니라 법에 있다. 그리고 그 답을 모르면, 가족은 명절마다 같은 다툼을 반복한다.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뉜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각자 얼마를 받는지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다. 이 장은 그 '기본값'을 정확히 짚는다.

1.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 순위

상속에는 순위가 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한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주),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별도 취급으로,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흔한 오해 하나. "자녀가 있어도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다. 1순위인 자녀가 있으면 2순위인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 순위는 칼같이 적용된다. 또 하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도 흔히 오해한다. 자녀도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전부 단독상속한다. 배우자는 형제자매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2. 대습상속 — 부모를 대신해 받는 손주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주가 부모를 대신해 상속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신해남보다 아들 영재가 먼저 사망했다면, 영재의 자녀(신해남의 손주)가 영재의 몫을 대신 받는다. 이때 손주는 영재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물려받는다(여러 명이면 그 안에서 다시 나눈다). 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 각자 얼마를 받는가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면 똑같이 나눈다. 다만 배우자는 절반을 더 받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쉽게 말하면,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는다. 서두의 형제 다툼에 대한 법의 답은 명확하다. 장남이라고 더 받지 않는다. 아들·딸 구분도 없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오래다.

신해남(72세) 가족으로 계산해 보자. 상속인은 배우자 허미향(68세), 아들 영재(45세), 딸 연선(42세)이고, 재산은 35억 원이다.

배우자 허미향	1.5	15억 원	자녀의 1.5배 (3/7)
아들 영재	1	10억 원	2/7
딸 연선	1	10억 원	2/7
합계	3.5	35억 원	1.5 : 1 : 1



[그림 4-1]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비율을 정수로 바꾸면 3 대 2 대 2다. 35억을 7로 나눠 허미향이 3, 영재와 연선이 각 2를 받는 구조다. 장남이라고 더 받는 칸은 어디에도 없다.

가족 구성이 달라지면 비율도 달라진다. 배우자와 자녀 셋이라면 1.5 대 1 대 1 대 1(곧 3:2:2:2)이 된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함께라면, 배우자가 부모 몫의 1.5배를 받는다. 자기 가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몫이 나온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환상이 "장남 우대"와 "기여한 만큼 자동으로 더 받는다"는 생각이다. 법정 상속분은 기여나 효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를 10년 모신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 비친 자녀가, 법정 상속분만 놓고 보면 똑같이 받는다. 이 '불공평해 보이는 공평'이 다툼의 씨앗이다. 그래서 기여를 인정 받으려면 별도 장치(기여분·유언·생전증여)가 필요하다(5장). 부모 입장에서는, 더 챙겨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맡기지 말고 생전에 분명히 정해두어야 그 뜻이 지켜진다.

4.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법정상속분은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다툼이 생겼을 때 돌아가는 기본값이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뉘도 된다(협의분할, 9장).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도 유효하다. 또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른다(다만 유류분의 한계가 있다, 6장). 즉 순서는 이렇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 합의가 되면 협의분할 → 둘 다 없으면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안전망인 셈이다. 그래서 "법대로 나누자"는 말은, 사실 "합의가 안 되니 기본값으로 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5. 2026년에 달라진 점

최근 개정으로 상속인 자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효도와 학대를 법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유기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신고(제1004조의2, 시행 2026. 1. 1.)를 도입했다. 또한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제1003조 개정).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오래 학대했더라도, 명백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상속을 막기 어려웠다. 이제는 가정법원의 신고로 그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끝까지 모신 자식이 손해 본 다"는 오랜 불만에 법이 응답한 셈이다(자세한 판례는 22장).

이 장의 정리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비율이다.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는다(제1009조).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손주가 대습상속한다(제1001조).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 곧 3 대 2 대 2로 나뉜다. 장남 우대도, 효도 가산도 자동으로는 없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일 뿐, 유언이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년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길도 열렸다.

내 가족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르다면 어떤 장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이 두 질문에서 대부분의 상속 설계가 시작된다. 가족 구성이 조금만 복잡해져도(재혼·손주·해외 거주 등) 계산이 까다로워지므로, 정확한 몫이 궁금하다면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내 가족의 법정상속분과 조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www.finitart.com 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5

5장. 먼저 받은 사람, 더 기여한 사람

— 특별수익과 기여분, 공평을 맞추는 두 장치

두 남매가 있었다. 오빠는 결혼할 때 부모에게 아파트 전세금 5억을 받았고, 유학비도 지원받았다. 동생은 그런 도움 없이 살았지만, 부모가 편찮으실 때 10년 가까이 곁에서 모셨다. 부모가 떠난 뒤, 오빠가 말했다. "법대로 똑같이 반반 나누자." 동생은 억울했다. "오빠는 이미 많이 받았고, 나는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누구 말이 맞을까.

법정상속분만 보면 오빠 말이 맞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먼저 받은 사람은 그만큼 빼고(특별수익), 더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더해준다(기여분). 이 두 장치가 '진짜 공평'을 맞춘다. 상속 분쟁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1. 미리 받은 사람 — 특별수익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큰 재산을 줬다면, 그 자녀는 이미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셈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미리 받은 증여·유증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 몫에서 먼저 빼고 계산한다. 서두의 오빠가 받은 5억이 바로 특별수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수익일까.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유학비,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가 해당한다. 반면 통상적인 용돈, 생활비,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는 교육비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 경계는 가정 형편과 증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다툼이 잦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의 기초로 산입한다. 수십 년 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의 것이면 계산에 들어온다.

여기서 핵심 한 가지. 특별수익은 사전증여 합산(10년)과 다르다. 상속세에서 합산하는 사전증여는 10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민법상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이 없다**. 30년 전 받은 결혼 자금도 분할 계산에 들어올 수 있다. 세금과 분할을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다.

서두 사례를 숫자로 풀어보자. 부모(배우자 없음)가 남긴 상속재산이 30억 원, 오빠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5억 원이라 하자.

간주 상속재산	—	—	30억 + 특별수익 5억 = 35억
법정상속분(1/2)	17.5억	17.5억	35억 ÷ 2
특별수익 차감	-5억	—	미리 받은 5억
실제 상속분	12.5억	17.5억	합계 30억

먼저 받은 오빠는 그만큼 덜 받아 균형이 맞춰진다. "이미 받은 건 받은 것"이라는 상식이 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만약 오빠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17.5억)보다 컸다면, 초과분을 토해내지는 않되 더 받을 상속분이 없을 뿐이다(초과특별수익).

2. 더 기여한 사람 — 기여분

이번엔 동생 차례다.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함께 일군 사람에게는 그 몫을 더해준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계산 구조는 이렇다.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떼어 기여자에게 따로 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더한다. 즉 기여자는 '기여분 + 나머지에 대한 자기 몫'을 받는다.

다만 기여분은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단순한 효도나 통상의 부양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을 참작해 정한다.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동생의 고민이 시작된다. 10년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특별한' 기여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함께 살며 간병했는지,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 이런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증거가 없으면 억울함은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힌다.

특별수익은 빼고, 기여분은 더한다

공평한 분할을 위해 '간주상속재산'을 먼저 만든다

상속재산 10억 원

+ 특별수익(생전증여) 2억 미리 받은 것은 더한다

- 기여분 1억 기여한 사람 몫은 뺀다

= 간주상속재산 11억 원

구제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민법 제1008·1008조의2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5장

[그림 5-1]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기여분 다툼의 90%는 '입증' 싸움이다. "내가 모셨다"는 말은 누구나 한다. 법원이 보는 것은 증거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권한다. ① 간병·동거 기간을 일지나 기록으로 남길 것. ② 부담한 의료비·생활비·간병비를 이체 기록으로 남길 것. ③ 더 확실한 길은, 부모가 건강할 때 유언이나 증여로 그 보답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사후에 기여분으로 다투는 것보다, 생전에 부모의 뜻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깔끔하고 다툼이 적다. 기여분은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입증의 무게는 온전히 기여한 사람이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기여한 사람을 두텁게 — 2026년 개정

다행히 최근 법은 기여한 사람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2026년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법원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년 판결).

이 변화의 의미는 크다. 과거에는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보답으로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깎이거나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 토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제는 '기여의 대가'로 인정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난다. 즉 부모가 "고생한 자식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미리 준 재산은,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동생 같은 사람을 위한 변화다(자세한 판례는 24장).

이 장의 정리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진짜 공평'을 맞추는 두 장치다. 미리 받은 증여·유증은 상속분에서 빼고(제1008조), 특별히 부양·기여한 사람에게는 더해준다(제1008조의2).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며(95다17885),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라야 인정되어 결국 입증 책임이다(97므513). 2026년 개정으로 기여한 사람이 받은 증여는 더 두텁게 보호된다.

서두의 남매처럼,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가 먼저 받았고 누가 더 기여했는지에 따라 정당한 몫은 크게 달라진다. 이 조정은 감정으로 다투면 끝이 없지만, 법과 증거로 정리하면 길이 보인다. 미리 받은 게 있거나 부모를 모신 사정이 있다면, 내 몫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는 것에서 분쟁 예방이 시작된다.

▶ 특별수익·기여분으로 내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www.finitart.com 에서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6

6장. 아무리 유언해도 지켜지는 최소한의 몫

— 유류분, 유언의 자유와 가족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지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 이런 유언도 그대로 다 지켜지지는 않는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몫을 유류분이라 부른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존권이 부딪치는 지점에서 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 범위의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한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어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남은 가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의 보장,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급격한 단절 방지다.

상당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있다. "내 재산이니 유언으로 누구에게 주든 자유 아니냐"는 말이다. 절반만 맞다. 처분의 자유는 있지만, 유류분이라는 바닥선까지 깨지는 않는다. 이 한 줄을 모르면 유언을 써놓고도 사후에 분쟁이 터진다.

2. 누가, 얼마를 받는가 — 유류분권자와 비율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은 민법이 정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시행 2025. 1. 31.】

정리하면 이렇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이 형제자매만 남은 상속에서는, 이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 설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

신해남(72세) 가족에 대해 보자. 상속인은 배우자 허미향(68세), 아들 신영재(45세), 딸 신연

선(42세)이다.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영재 1, 연선 1의 비율이다. 따라서 연선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된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산정의 세 단계

유류분 계산은 "얼마를 기준으로, 무엇을 더하고,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다. 출발점은 산정 기초재산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조문을 풀면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전부 뺀 금액이다. 핵심은 "어떤 증여를 더하느냐"다. 원칙은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더한다. 다만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이 넘어도 더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 판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수십 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오래된 증여라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제 신해남 사례로 계산해 본다. 가정은 단순화한 숫자다.

- ▶ 신해남이 생전에 아들 영재에게 빌딩 12억 원을 증여했다.
- ▶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아파트 6억 원과 금융자산 3억 원, 합계 9억 원이다.
- ▶ 채무는 없다고 본다.
- ▶ 유언으로 남은 9억 원도 영재와 허미향에게 돌아가, 딸 연선은 한 톨도 받지 못했다.

계산은 아래 표로 단계를 따라가면 한눈에 들어온다.

사전증여 (아들 영재)	12억 원	공동상속인 증여 (기간 무관)
상속개시 시 재산	9억 원	아파트 6억 + 금융 3억
채무	0원	—
산정 기초재산	21억 원	12억 + 9억 - 0
연선의 법정상속분 비율	2 / 7	배우자 1.5 : 영재 1 : 연선 1
연선의 법정상속분	6억 원	21억 × 2/7
연선의 유류분	3억 원	법정상속분 × 1/2
연선이 받은 재산	0원	유언으로 영재·허미향 귀속
유류분 부족액	3억 원	영재에게 반환 청구 가능

같은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6장. 유류분 부족액 계산 (민법 제1112~1118조)

유류분 부족액 = (A × B) - C - D

A 기초재산액
직속재산+증여+채무

B 유류분비율
법정상속분×1/2

C 특별수익
본인이 받은 것

D 순상속액
실제 받은 액

사례: 재산 7억, 전액 영재에게
A=7억, B=2/7×1/2=1/7
C=0, D=0
부족액 = 7억×1/7 = 1억 원

유류분 비율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4.25. 폐지

Heinwise | 상속실계의 기술 6장

[그림 6-1]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국 연선은 유류분 부족액 3억 원을 아들 영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문제가 따라온다. 유류분 반환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환의 형태가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쟁점도 달라진다. 반환 합의 전에 세액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일은 사망일로 확인)

4. 2026년,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핵심 변화는 네 가지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2026년 유류분 개정으로 다음이 바뀌었다. ①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115조 제1항 개정). ②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여상속인 보호, 제1008조의2 준용 반영). ③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선고가 도입되었고(제1004조의2, 시행 2026. 1. 1.),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도 받지 못한다. ④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다(제1003조 개정).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가액반환이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결과 유류분권자와 반환의무자가 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이 생기곤 했다. 이제는 금전으로 정산하므로, 공유로 인한 2차 갈등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기여상속인 보호다.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으로 토해내야 한다면 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이고, 개정법이 이를 반영했다. 신해남을 10년간 간병한 연선이 그 대가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반환에서 빠질 여지가 생긴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적으로 유류분 소송의 상당수는 "증여 시점"과 "증여 목적"을 둘러싼 다툼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진다. 생전 증여 때 계약서에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남겨두면, 뒷날 기여상속인 보호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한 가지 주의가 있다.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사망 시점과 공포·시행 시점, 경과규정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일이 며칠 차이로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다.

5.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유류분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권리가 있어도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두 개의 기간이 있다. 하나는 짧은 시효, 하나는 긴 시효다. 짧은 쪽은 "안 때로부터 1년"이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센다. 긴 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침해 사실을 끝내 몰랐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실무에서 함정이 된다. 가족이 슬픔과 장례에 정신이 없는 사이 1년은 빠르게 지나간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연선이 영재의 사전증여 사실을 사망 직후 알았다면, 연선은 그로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한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시효를 넘긴 경우"다. 권리는 분명히 있었는데, 1년을 흘려보내 청구 자체가 막힌다. 사망 직후 재산의 전모를 모르더라도, 의심이 든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6. 분쟁을 줄이는 설계 — 유류분을 미리 다루는 법

유류분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다툼의 크기는 설계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둔다.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계획이라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미리 안다. 그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균형을 맞춰두면, 사후에 부동산을 깨지 않아도 된다.

둘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유류분 정산에 쓸 현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입 단계에서 함께 설계한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상담에서 "유언만 잘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유언은 유류분 앞에서 한계가 있다.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다.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메울 현금 재원을 금융상품으로 준비한 뒤,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의사를 분명히 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설계"가 된다.

셋째, 가족과 미리 대화한다. 유류분 분쟁의 뿌리는 금액이 아니라 "몰랐다"는 서운함인 경우가 많다. 생전에 분배의 이유를 설명해두면, 법적 청구로 가기 전에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준비는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해두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다.

이 장의 정리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깨지지 않는 최소한의 료이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폐지되었다.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고,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기간과 무관하게 산입된다. 2026년 개정으로 반환은 금전이 원칙이 되었고, 기여상속인과 진정한 상속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분쟁은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대화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 상속·증여 설계와 유류분 계산은 www.finitart.com 에서 이어집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7

7장. 유언 — 살아 있을 때 쓰는 마지막 설계도

— 다섯 가지 방식, 하나의 원칙: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종이일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책상 서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다. "큰아들에게 집을, 작은아들에게 예금을 남긴다"는 분명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유언을 무효라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진심은 분명했지만, 형식 하나가 빠져 그 뜻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남은 형제는 결국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며 사이가 틀어졌다.

유언은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설계도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정해진 형식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있다. 한 글자, 한 도장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1. 왜 유언이 필요한가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뉜다. 부모를 10년간 간호한 딸도,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아들도 똑같이 받는다.

신해남(72세)에게는 직장인 아들 영재(45세)와 카페를 운영하는 딸 연선(42세)이 있다. 연선은 어머니 허미향(68세)과 함께 아버지를 오래 돌봤다. 신해남은 연선에게 조금 더 물려주고 싶지만, 유언이 없으면 두 자녀는 똑같이 나눠 받는다.

유언이 필요한 이유는 셋이다. 첫째,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고 싶을 때다. 더 기여한 자녀에게 더 주거나, 배우자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려면 유언이 필요하다. 둘째,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사위·며느리, 단체 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다. 이는 유증으로만 가능하다. 셋째,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싶을 때다. 명확한 유언 한 장이 수년의 소송을 막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유언은 '유언사항 법정주의'를 따른다.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이 생긴다. 재산의 처분(유증), 유언집행자 지정, 인지, 미성년 후견인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장례는 간소하게" "형제끼리 사이 좋게" 같은 당부는 도의적 의미는 있어도 법적 강제력은 없다.

2. 유언은 '요식행위'다 — 다섯 가지 방식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이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60조 유언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제1066조	무료·간편, 하자 시 무효
공정증서	증인 2인 + 공증인 구술·낭독	제1068조	가장 안전, 검인 불요
녹음	유언자 + 증인 구술	제1067조	진위 다툼 위험
비밀증서	봉인 + 증인 2인	제1069조	내용 비밀
구수증서	급박 시 증인 2인 + 7일 내 검인	제1070조	응급용, 요건 까다로움



[그림 7-1]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실무에서 사실상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두 가지다. 유언능력은 만 17세 이상이면 인정된다(제1061조).

3. 자필증서 —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방식

유언자가 직접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한다.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면 무효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써도 무효다. 반드시 본인의 자필이어야 한다. 무효가 되는 대표 사유는 이렇다. 연월일에서 '일'을 빠뜨리면 작성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다.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며,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지장)도 날인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주소 누락이 의외로 치명적이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의 취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유언자를 특정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적지 않거나 동·호수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자필 유언이 형식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주소'를 빠뜨린 사례다. 진심은 분명했지만 주소 한 줄이 없어 유언 전체가 휴지가 되었다. 자필증서를 쓸 때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이 다섯 가지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확인하기를 권한다. 예: "2026년 6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로 ○○, 신해남" 뒤에 도장.

4. 공정증서 — 가장 안전한 방식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기명날인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위조 위험이 없고, 형식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가장 낮으며, 사망 후 검인 절차도 필요 없다. 비용은 보통 수십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짜리 분쟁과 비교하면 사실상 무효다.

여기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증인 자격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72조(증인 결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수유자)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해남이 연선에게 더 주는 유언을 한다면, 연선이나 연선의 배우자·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준비해야 안전하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물려줘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만큼 돌려줘야 할 수 있다(6장). 또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사망 시점 시가로 평가된다. 유언은 '뜻'을 정하지만, 유류분과 세금이라는 두 한계 안에서 작동한다.

5. 나머지 세 방식 — 알아두되 권하지 않는 이유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나 매체 손상·편집 의심으로 진위 다툼이 잦다. 비밀증서 유언은 내용을 봉인해 비밀로 유지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

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며, 증인 2인과 7일 내 법원 검인이라는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다.

6. 유언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 철회의 자유

유언은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108조·제1109조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자유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유언이 앞선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과 어긋나는 생전 처분(예: 유증하기로 한 집을 생전에 매각)을 하면 그 부분도 철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이 우선한다. 5년 전 자필 유언을 썼더라도 올해 공정증서로 새 유언을 하면 새 유언이 기준이 된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가장 권하는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이다. 공증인이 형식을 챙겨 무효 위험이 거의 없고, 원본을 보관해 분실·위조가 없으며, 검인이 필요 없어 집행이 빠르다. 한 가지 더, 유언과 보험을 함께 설계하면 강력하다. 공정증서로 '누구에게 무엇을'을 확정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 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지므로(대법원 2003다29463),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인다. 재산·가족 상황이 바뀌면 유언도 갱신하라.

이 장의 정리

유언은 형식이 생명인 요식행위다. 방식을 어기면 진심이 분명해도 무효다(제1060조). 다섯 방식 중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날인)와 공정증서(증인 2인+공증인)가 주로 쓰이며, 주소 누락·날인 누락이 자필 유언의 흔한 무효 사유다. 증인 결격(제1072조)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언은 유류분과 세금의 한계 안에서 작동하며, 언제든지 새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가장 안전한 길은 공정증서다.

작은 형식 하나가 평생 모든 재산의 향방을 바꾼다. 내 뜻을 확실히 남기고 싶다면, 형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첫걸음이다.

▶ 유언 방식 선택과 작성 점검, 보험과의 결합 설계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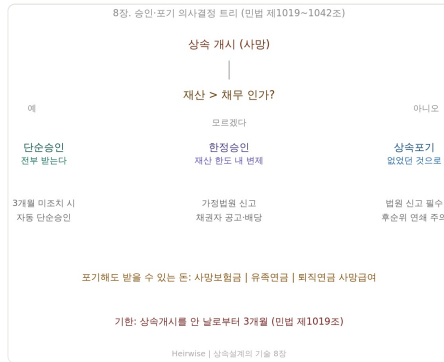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8

8장.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승인과 포기의 기술

— 3개월, 세 가지 선택지



[그림 8-1] 빚이 많을 때 — 승인·포기 의사결정 트리

1. 상속인의 세 가지 선택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모두 받는다
- ▶ 한정승인 — 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수락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간다

3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2. 본인도 모르게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는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있다.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해남 씨(72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한 것도 단순승인 사유다. 협약에 참여한 뒤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다.

한정승인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장례비용이다. 신해남 씨의 예금에서 장례비를 인출하면, 그것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가능하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장례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상속인의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3. 한정승인 — 빛의 규모를 모를 때

신해남 씨가 사망했는데, 빛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승인이 유용하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3억 원이고 채무가 5억 원이더라도, 3억 원만 갚으면 된다.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유재산). 유류분권도 유지된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 상속재산 처분 등 단순승인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특칙 (2023.6.14. 시행):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법정대리인(부모)의 부작위로 한정승인 기회를 놓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부모가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88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 사전에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상속포기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가족끼리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도 무효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것: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장성 금융상품)
- ▶ 유족연금, 퇴직연금 사망급여, 공제회 급여금

여기서 금융상품 설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빛이 많은 피상속인이라도, 생전에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장성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은 포기하되 보험금은 지킨다 — 이것이 상속 재원 설계의 기본 원리다.

5. 포기의 연쇄 — 93세 할머니에게까지 빛이 넘어간다

영재(45세)와 연선(42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 허미향 씨(68세)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허미향 씨까지 함께 포기하면, 상속 순위가 직계존속으로 넘어간다. 신해남 씨의 어머니(93세, 요양병원 입원 중)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면 93세 할머니가 아들의 수익 원 빛을 떠안는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례다.

이 장의 정리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	재산+채무 전부 승계. 기한 내 미조치 시 자동	민법 제1026조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법원 신고 필수	민법 제1041~1042조
특별한정승인	3개월 후 채무초과 알게 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 한정승인 특칙	성년 도달 후 6개월 내 채무초과 인지 시 가능 (2023.6.14. 시행)	민법 제1019조 제4항
포기해도 수령 가능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퇴직연금 등 고유재산	
포기의 연쇄	자녀→배우자→직계존속 순으로 전부 포기 필요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를 파악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두세요. ▶ 영상 → 유튜브 [신대식의 상속수업] | 상담 → finitart.com

면책 문구

이 책은 상속·증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세무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 설계 상담: Heirwise (finitart.com) | 저자: Syn Dae Sik (AFPK 재무설계사)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9

9장. 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 협의·조정·심판, 그리고 분할이 곧 절세인 이유

아버지가 남긴 건물 한 채를 두고 삼 남매가 분할을 미뤘다. "나중에 정하자"며 몇 년을 흘려보냈다. 그사이 건물값은 올랐지만, 형제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다. 게다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서 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공제도 일부 놓쳤다. 결국 법원의 심판까지 가서야 분할이 끝났고, 그동안 들어간 시간·비용·세금은 고스란히 손실이 되었다. "그때 바로 나눴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았다.

상속인이 여러이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합의로 나누고, 안 되면 법원의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한다. 순서대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커진다. 그리고 분할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세금까지 좌우한다.

1. 첫 번째 길 — 협의분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속인들이 합의로 나누는 것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된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도 유효하다. 다만 전원 합의가 필수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무효다. 그래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이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분할 방법도 다양하다. 부동산을 공유로 두는 방법,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환가분할)이 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가족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2. 두 번째·세 번째 길 — 조정과 심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으로 간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법원이 정한다.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자유로운 비율, 전원 동의 필요
조정분할	법원의 조정	합의 유도, 비교적 신속
심판분할	가정법원	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종합 판단



[그림 9-1] 재산 분할의 세 단계

심판분할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으로만 나누지 않는다. 특별수익(미리 받은 것)과 기여분(더 기여한 것)을 모두 따져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다(5장). 그래서 누가 무엇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가른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분할은 빠를수록 좋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변하고, 형제 사이 감정의 골도 깊어진다. 서두의 상 남매처럼 미루다 심판까지 가면 시간·비용·관계가 모두 상한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분할을 마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분할이 늦어지면 이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 수 있다. 분할 협의는 곧 절세 협의이기도 하다.

3. 분할의 효과 — 상속개시 시로 소급

분할이 끝나면 그 효과는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분할로 정해진 재산은 처음부터 그 상속인의 것이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이 상속분을 거래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래서 분할 전에 일부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했다면, 그 거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분할은 빠르게 끝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4. 분할은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본다

분할에서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단순한 비율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걸려 있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협의분할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좌우한다(상증세법 제19조, 최소 5억~최대 30억). 배우자 몫을 늘리면 1차 상속의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는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1차와 2차 상속을 함께 내다보고 정해야 한다. 눈앞의 절세만 보면 다음 상속에서 더 큰 세금을 만날 수 있다.

이 장의 정리

상속재산은 협의·조정·심판의 세 방법으로 나눈다.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제1013조), 안 되면 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간다. 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다.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1015조). 분할은 빠를수록 좋고,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1차·2차 상속의 세금을 좌우한다.

분할은 감정과 세금이 얹혀 가장 다투기 쉬운 단계다. 미루면 가격·관계·세금이 모두 불리해진다. 공평한 분할과 절세를 함께 잡으려면,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한 번 설계해 보는 것이 좋다.

▶ 분할 설계와 배우자공제·2차 상속 검토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PART 2

세금과 절세 — 얼마를 내고, 얼마를 줄이나

10장 상속세 계산 · 11장 사전증여 · 12장 의도하지 않은 증여

13장 10년 증여 설계 · 14장 보험금과 상속 · 15장 상속세 자원

CHAPTER 10

10장.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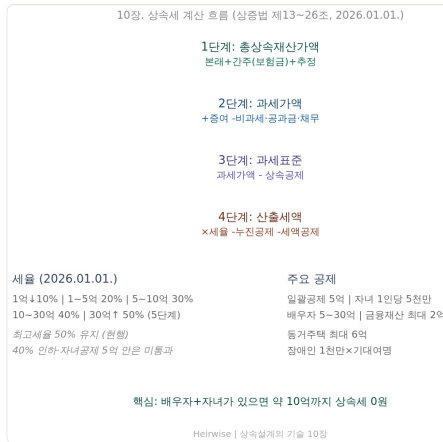
— 30억 재산에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다섯 단계로 따라가기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뿐인 가정이 있었다. 자녀들은 "우리 같은 보통 집은 상속세와 상관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집이 알고 보니 2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였고, 배우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남은 자녀들은 수억 원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더 큰 문제는 낼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다. 다섯 단계만 알면 큰 그림이 잡힌다. 무엇이 재산인지 정하고, 얼마를 빼주는지 보고, 세율을 곱하고, 마지막에 깎아준다. 내 가족에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 장에서 직접 따라가 본다.

1. 상속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된다

흐름은 이렇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빚과 비용을 빼면 과세가액이 된다. 거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낼 세금이 정해진다.



[그림 10-1]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세·증여세, 언제부터 내나?
 원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2026 · 신해년 가족 사례

면세점이란?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금액 — 이 금액 아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상속세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

배우자 + 자녀 2명

10억

까지 비과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허위증 + 영재 · 연산

자녀 2명만 (배우자 없음)

5억 초과

부터 과세

일괄공제 5억만 적용
 영재 · 연산

왜 자녀가 2명인데도 면세점이 같을까?
 자녀공제(1인 5천만)는 일괄공제 5억에 이미 포함돼, 더 큰 5억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적용 시 면세점은 더 올라갑니다

증여세 누구에게 얼마까지 무세인가
 10년 말산 기준 ·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한도 초과분부터 과세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2천만원)	5천만원
부모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1천만원
+ 혼인 · 출산 시	1억원 추가

상속세 · 증여세 세율은 동일 — 과세표준에 10% ~ 50% 누진 적용

정확한 세액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상담 → www.finitart.com

HeirWise

[그림 10-1b] 상속세 면세점 — 배우자 有 약 10억 / 無 5억

핵심은 "보이는 재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생전에 미리 준 재산도 일정 기간 안의 것은 다시 합산된다.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 과세가액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지 않는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끌어와 합산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녀 등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외의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다. "미리 줬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다(자세히는 11장).

과세가액을 구할 때는 빼주는 것도 있다.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이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을 인정하고, 일반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한다. 빚(채무)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할 것으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 임대보증금도 돌려줘야 할 채무이므로 공제 대상이다.

3. 상속공제 — 얼마를 빼주는가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큰 폭으로 빼주는 단계가 온다.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를 한도 2억 원까지 공제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배우자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으로 빠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여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 원)를 추가로 공제하고,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제23조의2)도 받을 수 있다.

서두의 사례가 아팠던 이유가 여기 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받지 못했고,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20억 아파트에 큰 세금이 나온 것이다. 배우자 유무가 세금을 좌우한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배우자가 생존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칠 때의 이야기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뿐이라 문턱이 확 낮아진다. 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야 적용되므로, 협의분할에서 배우자 몫을 0으로 두면 공제도 줄어든다. 한때 논의된 자녀공제 5억 확대안은 2026년 6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4. 세율을 곱한다 — 산출세액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5단계 누진세율을 곱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2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7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7천만 원). 증여세 세율도 같다(제56조). [2026.1.1. 시행 — 종전 30억 원 초과 50% 구간 삭제]

신해남(72세) 가족 사례로 계산해 본다. 배우자 허미향이 생존해 있고, 모든 숫자는 가정이다.

총상속재산	30억 원	빌딩·아파트·금융 등
채무·장례비	-1억 원	공과금·채무·장례비
상속세 과세가액	29억 원	30억 - 1억
일괄공제	-5억 원	제21조
배우자공제	-10억 원	허미향이 실제 상속
금융재산공제	-2억 원	한도 2억
과세표준	12억 원	29억 - 17억
세율 적용	40%	10억~30억 구간
산출세액	3.2억 원	12억 × 40% - 1.6억
신고세액공제	-960만 원	3% (제69조)
납부세액	약 3억 1,040만 원	산출세액 - 공제

신해남 사례 — 30억에서 상속세 약 3억까지

배우자 허미향 + 자녀 2명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 기준

총 상속재산 30억 원

- 상속공제 18억 일괄 5억 + 배우자 13억

= 과세표준 12억 원

× 세율 40% - 누진공제 1.6억 → 산출세액 3.2억

- 신고세액공제 3% 960만 원

= 납부세액 약 3억 1,040만 원

상증법 제13·18~26·69조 (2026.01.01. 기준)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10장

[그림 10-2] 신해남 상속세 계산

같은 30억이라도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만약 배우자공제를 5억만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7억으로 늘고, 세금은 5억 원을 넘어선다. 분할 설계가 곧 절세 설계인 셈이다.

5. 신고하고 납부한다 — 그리고 '현금'의 문제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낸다. 서두 가정의 진짜 위기가 여기 있었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제67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도로 빼준다(제69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나뉘 내기, 이자 부담)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내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은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어, 현금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15장).

이 장의 정리

상속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된다. 총상속재산에서 빚과 비용을 빼 과세가액을 구하고(제13조),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제19·21·22조), 10~50%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제26조),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낼 세금이 나온다(제69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액을 좌우한다.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마주할 수 있다. 내 가족의 예상 세액과 낼 현금이 충분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상속 설계의 출발점이다.

▶ 내 가족의 예상 상속세와 절세·재원 설계는 www.finitart.com 계산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해 보기**

QR을 스캔하면 상속분·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www.finitart.com/calculator.html

CHAPTER 11

11장. 사전증여 — 상속세를 줄이는 시간의 전략

— 똑같이 물려줘도, 언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한 어르신이 병세가 깊어지자, 자녀들에게 서둘러 재산을 나눠 주었다. "미리 줘야 상속세를 아낀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이다. 자녀들은 증여세를 냈고, 가족은 절세했다고 안심했다. 그런데 1년 뒤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그 증여재산이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매겨졌다. 절세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다. 그런데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비밀은 '시간'에 있다. 시간을 두고 나누면, 합산을 피하고 공제를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간이 없으면, 서두의 어르신처럼 헛수고가 된다.

1. 사전증여는 왜 상속세를 줄이는가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증여재산공제를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다. 둘째, 일정 기간이 지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긴 증여는 합산하지 않는다.

조문을 뒤집어 읽으면 전략이 나온다.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는 사망 10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에게는 5년 전에 증여를 마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진다. 서두의 어르신이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2. 미리 준 것과 늦게 준 것 — 무엇이 다른가

신해남이 아들 영재에게 5억 원을 증여하는 두 경우를 비교한다. 하나는 사망 12년 전, 하나는 사망 3년 전이다.

상속재산 합산	합산 안 됨 (10년 경과)	합산됨 (10년 이내)
증여 당시 증여세	부과	부과
상속세 영향	없음	5억이 과세가액에 가산
결과	상속세 부담 감소	절세 효과 거의 없음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드는 차이

같은 재산도 미리 나눠 증여하면 세부담이 달라진다

한 번에 상속

증여 없이 보유
사망 시 전액 과세
높은 누진구간
→ 세부담 큼

10년 나눠 증여

10년마다 공제
낮은 누진구간
미리 이전
→ 세부담 ↓

상증법 제53·56·57조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11장

[그림 11-1] 사전증여 10년 전략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사전증여의 핵심은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다. 같은 증여라도 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임종이 임박해 서둘러 증여하면 그대로 합산되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건강할 때, 50대부터' 시작하라고 권한다. 또 한 가지, 합산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한 10년'이다. 증여 시점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다.

3.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에서 빼준다

10년 이내 증여라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를 다시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전증여의 실익은 "세금을 두 번 내는가"가 아니라, "합산을 피해 낮은 세율 구간과 공제를 활용하는가"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더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개발 예정 토지, 성장하는 주식 등)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가치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다. 시간과 가치 상승이 함께 작동하는 셈이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준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 방식(현금 대 부동산)을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한다. 또 증여 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이월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18장).

이 장의 정리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원리는 시간이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제13조).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 중과세는 없다(제28조). 합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이루어지므로,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 만큼 절세된다. 결국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

서두의 어른신처럼 임종이 임박해서야 시작하면 늦다. 사전증여는 '내가 건강한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내 자산 중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산의 성격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사전증여 시점과 대상 설계는 www.finitart.com 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2

12장. 의도하지 않은 증여 — 세법이 보는 증여의 범위

— "그냥 도와준 건데" 세금이 붙는 순간들

부모가 사회 초년생 딸의 전셋집을 구해주며 보증금 3억 원을 대신 내주었다. "내 자식 집 하나 마련해 준 게 무슨 죄냐" 싶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내문이 날아왔다. 딸의 소득으로는 3억을 마련할 수 없는데 큰 재산이 생겼으니, 그 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증여한 적 없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세법이 보는 증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증여한 적 없는데 증여세가 나왔다." 상담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계약서에 '증여'라고 쓰지 않아도,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넘어가면 세법은 증여로 본다. 이 장은 그 '의도하지 않은 증여'를 다룬다.

1. 세법은 증여를 넓게 본다

민법의 증여는 "주겠다, 받겠다"는 합의다. 그러나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정의)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다. 이름이 무엇이든, 공짜로 이익이 넘어가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도와준 것"이 "증여한 것"이 된다.

2. 이런 거래도 증여로 본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이익을 줌	제35조
채무 면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면제해 줌	제36조
부동산 무상 사용	부모 건물을 자녀가 공짜로 씀	제37조
보험금	보험료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름	제34조
자금 출처 부족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	제45조(증여 추정)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	제45조의2(증여 의제)

세법이 '증여'로 보는 6가지 거래

현금을 직접 주지 않아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

❶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가와와의 차액

❷ 채무 면제
면제·인수·변제액

❸ 부동산 무상 사용
사용이익(5년)

❹ 금전 무상·저리 대출
적정이자 차액(연 4.6%)

❺ 보험금
보험료 부담자 ≠ 수익자

❻ 합병·증자 등
지분가치 증가분

상증법 제35·36·37·41조의4·34조 등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12장

[그림 12-1] 세법상 증여로 보는 6가지 거래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겨 싸게 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제35조). 예컨대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에 팔면, 시가의 30%(3억)를 넘는 차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다. "가족끼리 싸게 넘긴 것"이 세무서에는 증여로 보인다. 거래 전에 시가와와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 가장 흔한 함정

서두의 전세보증금 사례가 바로 자금 출처 문제다. 소득이 적은 자녀가 갑자기 큰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는 그 돈의 출처를 묻는다.

대법원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산을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증세법 제45조 증여 추정). 다만 납세자가 자금의 원천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추정은 깨진다. 입증 책임의 분배가 실무의 핵심이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위험하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두면, 세법은 이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다(제45조의2).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여기에 걸릴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례가 세 가지다. 첫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주식을 만들어 두는 경우. 둘째,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취득자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셋째, 가족 간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모두 "도와준 것"이지만 세법에는 증여로 잡힐 수 있다. 핵심 대비책은 둘이다. ① 정말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며 기록을 남긴다(무이자·저리도 그 차액이 증여가 될 수 있다). ② 자녀가 큰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자금의 출처(소득·기존 재산·정당한 증여)를 미리 정리해 둔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이 장의 정리

세법의 증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완전포괄주의, 제2조 제6호).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보험금, 자금 출처 부족, 명의신탁 등은 "주겠다"는 말이 없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출처(제45조)와 명의신탁(제45조의2)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된다. 가족 간 거래일 수록 시가와와의 차이, 자금의 출처, 차용 증빙을 남겨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를 피해야 한다.

선의로 도운 일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면 억울하다. 자녀에게 큰 도움을 주기 전에, 그것이 세법상 증여로 잡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가족 간 자금 이동·거래가 증여로 잡히는지 점검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3

13장. 10년 단위의 증여 설계

— 같은 돈도 나눠서, 일찍, 여러 명에게

비슷한 재산을 가진 두 집이 있었다. A 집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조금씩 증여해, 자녀가 장성했을 때 상당한 재산을 세금 없이 넘겼다. B 집은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며 미루다, 결국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냈다. 똑같은 돈인데 한 집은 0원, 다른 집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냈다.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였다.

증여 설계의 기본 단위는 10년이다. 증여재산공제도, 상속재산 합산도 모두 10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10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의 차이를 만든다.

1.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살아난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10년간 합산하여 다음을 공제한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직계존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한다.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한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도 10년 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나누면 공제를 반복해서 쓸 수 있다.

2.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자. 한 번에 많이 주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지만,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를 반복하고 낮은 구간을 활용한다.

한 번에	0년차에 1억 5천만	5천만 (1회)	1억
나눠서	0년차 5천만	5천만	0원
	10년차 5천만	5천만 (재적용)	0원
	20년차 5천만	5천만 (재적용)	0원
결과	—	1억 5천만	0원

같은 1억 5천만 원이라도, 20년에 걸쳐 10년 단위로 나누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A 집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림 13-1] 10년 주기 분할증여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증여 설계의 3원칙은 "빠르게, 나눠서, 여러 명에게"다. 첫째, 빠르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미성년 2천만 원 공제도 쓰고, 10년 주기를 여러 번 돌릴 수 있다. 둘째, 나눠서. 10년 단위로 분산하면 공제가 반복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쓴다. 셋째, 여러 명에게. 배우자에게 6억, 자녀 각각에게, 사위·며느리·손주에게 분산하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준다. 증여는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오래 이어가는 습관'으로 접근해야 한다.

3. 누구에게 받았는지 중요하다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다. 다만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본다(직계존속+그 배우자).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 어머니에게 5천만을 따로 받아도 합산되어 공제는 5천만 원 한 번만 적용된다. 반면 할아버지(조부모)와 아버지는 별개이므로, 세대를 나누면 공제를 각각 쓸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할증과세(30%, 미성년·고액은 40%)가 붙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할증을 감수하고도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4. 혼인·출산이라면 공제가 더 있다

최근 신설된 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양가 부모가 함께하면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하다. 결

혼·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시점이, 동시에 절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 장의 정리

증여 설계의 단위는 10년이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등)는 10년마다 다시 살아나고(제53조), 동일인 증여는 10년 합산된다(제47조 제2항). 따라서 일찍 시작해 10년 주기로 나누고,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혼인·출산 시에는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제53조의2). 증여 설계의 핵심은 시간과 분산이다.

A 집과 B 집의 차이는 재산이 아니라 '언제 시작했는가'였다. 내 가족의 자산과 구성에 맞는 10년 증여 계획을 지금 세우면,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 10년 주기 증여 계획과 무세 한도 계산은 www.finitart.com 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4

14장.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민법은 아니라 하고, 세법은 맞다 한다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은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받았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세금이 없다"고 들었던 터라 신고하지 않았다. 1년 뒤, 세무서에서 상속세 누락 통지가 왔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가산세까지 붙었다. 반대로 옆집은 자녀가 계약자·수익자로 보험을 설계해, 같은 보험금을 세금 없이 받았다. 똑같은 보험금인데, 한쪽은 세금을 내고 한쪽은 내지 않았다. 차이는 '계약 구조'에 있었다.

사망보험금을 두고 혼한 오해가 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세금이 없다"는 생각이다. 절반만 맞다. 민법에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세금 계획이 어긋난다.

1. 민법과 세법의 시선이 다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는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이유다(3장·8장). 그러나 세법은 그 돈의 출처가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자 이름이 누구든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서두의 부인이 세금을 낸 이유가 여기 있다. 남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

2. 계약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보험료 부담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부친(피상속인)	부친	자녀	상속세 (제8조)
모친	부친	자녀	증여세 (제34조)
자녀 본인	부친	자녀	과세 없음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그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같은 보험금,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로 갈린다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과세를 가른다

피상속인이 보험료 부담

계약자 = 피상속인
→ 상속재산 간주
상속세 과세

자녀가 보험료 부담

계약·납입 = 자녀
→ 자녀 고유재산
상속세 비과세

상증법 제8조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14장

[그림 14-1] 보험금 — 보험료 부담자 기준

세 번째 줄이 옆집의 비결이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수익자가 되어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증여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보험금 과세를 피하는 핵심은 "수익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조건이 있다.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실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납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소득 없는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보험료를 넣어주면, 그 보험료가 다시 증여로 잡힌다. 구조만 만들고 실질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3. 그래도 보험금이 유리한 이유 — 납세 자원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도, 보험은 여전히 강력한 상속 도구다. 사망과 동시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상속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재산이 부동산뿐이면, 상속세를 내려고 그 부동산을 급히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10장). 보험금은 사망 즉시 현금으로 들어와 이 문제를 푼다. 그래서 보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계약 구조를 잘 짜면 보험금 자체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과세되더라도 상속세 낼 현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지킨다.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내느냐'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하는 것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도 계약자·수익자를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장의 정리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제8조). 핵심 기준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이다. 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비과세로 갈린다(제8·34조). 과세되더라도 보험금은 사망 즉시 현금이 들어와 상속세 납세 재원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서두의 두 집처럼, 같은 보험금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계약자·수익자 구조부터, 새로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 보험은 상속 설계에서 가장 손쉽게 큰 차이를 만드는 도구다.

▶ 내 보험의 계약 구조 점검과 상속세 자원 설계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5

15장. 보험으로 상속세 자원 만들기

— 세금은 현금으로 낸다, 그 현금을 미리 만드는 법

평생 빌딩 한 채를 일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그 빌딩을 물려받아 기뻐지만, 곧 현실에 부딪혔다. 상속세가 수억 원인데, 빌딩만 있고 현금은 없었던 것이다. 세금을 내려면 빌딩을 팔아야 했는데, 급매로 내놓으니 제값을 받지 못했다. 평생 일군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 나서야 세금을 냈다. 반면 비슷한 처지의 옆집은 미리 종신보험을 들어두어, 사망과 동시에 들어온 보험금으로 세금을 내고 건물을 그대로 지켰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낸다.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세금 낼 돈'이 없어 곤란해진다.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푸는 도구가 보험이다. 이 장은 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쓰는 법을 다룬다.

1. 진짜 문제는 '낼 현금이 없다'는 것

상속세 계산이 끝나도,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증세법 제67조).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이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한꺼번에 못 내면 연부연납(나뉘 내기, 가산이자 부담)이나 물납(부동산으로 내기)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은 평가에서 불리해 손해를 보기 쉽다. 결국 가장 유리한 길은 '낼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서두의 두 집을 가른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을 미리 마련했는가'였다.

2. 종신보험이 재원이 되는 원리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과 동시에 현금이 들어오므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이 되는 흐름

부동산 위주 상속에서 '낼 현금'을 미리 마련한다

① 종신보험 가입

피상속인 생존

② 사망 →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

③ 상속세 납부재원

현금으로 납부

상증법 제8조 · 실무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15장

[그림 15-1] 종신보험 상속세 자원

흐름은 단순하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온다. 상속인은 그 보험금으로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납부한다.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되고, 급매로 손해 볼 일도 없다. 평생 일군 자산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상속세 재원 설계의 출발점은 "예상 세액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재산이 부동산 중심이고 예상 상속세가 크다면, 그 세액에 맞춰 종신보험 가입 금액을 정한다. 예컨대 예상 상속세가 3억이라면, 사망보험금 3억 안팎의 종신보험이 재원이 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녀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도 있다. 핵심은 '세금만큼의 현금'을 사망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다.

3. 계약 구조를 잘 짜면 보험금도 비과세

보험금은 14장에서 보았듯 계약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를 활용하면 재원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로 갈린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수익자가 되어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증여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녀가 계약자가 되는 구조를 쓰면, 상속세 낼 현금을 마련하면서 그 보험금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실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납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소득 없는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보험료를 넣어주면 그 보험료가 다시 증여로 잡히므로 주의해야 한다(12장).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종신보험을 활용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첫째, 계약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 보험금이 과세될지 비과세될지가 정해진다. 둘째,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계약자·수익자를 점검해 더 유리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새로 가입하든 기존 보험을 점검하든, 처음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

4. 보험의 두 가지 역할

정리하면 상속에서 보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계약 구조를 잘 짜면 보험금 자체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설정 과세되더라도 사망 즉시 현금을 만들어 상속세 납세 재원이 된다. 부동산을 지키면서 세금을 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보험인 셈이다. 그래서 재산이 부동산 중심인 가정일수록 보험의 역할이 크다.

이 장의 정리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넬 돈'이 문제가 된다(제67조). 종신보험은 사망과 동시에 현금을 만들어 이 문제를 푼다. 나아가 자녀가 계약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하면 보험금 자체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제8·34조). 보험은 자원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부동산 중심 자산가에게 특히 강력한 도구다.

서두의 두 집처럼, 같은 재산도 재원을 준비했는가에 따라 건물을 지키느냐 헐값에 파느냐가 갈린다. 내 예상 상속세가 얼마이고 그만큼의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예상 상속세에 맞춘 자원·보험 설계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PART 3

도구와 구조 — 신탁·법인으로 부를 옮기다

16장 신탁 · 17장 장애인 신탁 · 18장 이월과세

19장 가족법인 · 20장 차등배당 · 21장 법인 vs 개인

CHAPTER 16

16장. 신탁 — 내 뜻대로 물려주는 도구

— 유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신탁이 간다

홀로 지내던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평소 "내가 죽으면 재산은 막내에게"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판단력이 흐려지자 재산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어떤 가족은 어르신을 모시겠다며, 또 어떤 가족은 재산을 지키겠다며 다투었다. 유언장을 써두긴 했지만,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관리까지는 막아주지 못했다. 만약 미리 신탁을 설정해 두었다면, 살아서는 본인을 위해 관리되고 사망 후에는 막내에게 넘어가도록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언은 '죽은 뒤'를 정한다. 그러나 사람은 죽기 전에 판단력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단계적으로 또는 조건을 붙여 물려주고 싶기도 하다. 유언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이 영역을 채우는 도구가 신탁이다.

1.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재산을 믿을 만한 곳(수탁자)에 맡기고, 내가 정한 뜻대로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다. 맡긴 재산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정해진 목적에만 쓰인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내가 정한 설계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릇"이다. 살아 있을 때의 관리부터 사망 후의 분배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유언과 다르다.

2. 유언대용신탁 — 살아서는 나, 죽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가 유언대용신탁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도록 정하는 신탁이다. 위탁자는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 재산의 이익을 누리고, 내가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유언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별도의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살아서는 내가, 사후엔 지정한 가족이 받도록 미리 설계한다



[그림 16-1] 유언대용신탁 구조

효력 시점	사망 후	생전 설정, 사망 시 자동 이전
생전 관리	불가	가능(치매 등 대비)
검인 절차	필요(공정증서 제외)	불필요
조건·단계 설정	제한적	유연(나이·조건부 가능)

3. 수익자연속신탁 — 2대, 3대까지 정한다

신탁은 한 세대를 넘어 그다음 세대까지 미리 정할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다음 수익자가 수익권을 갖도록 연속하여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죽으면 자녀에게"처럼 여러 단계를 미리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이 유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유언으로는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죽은 뒤에는 내 자녀에게"라고 2대에 걸쳐 못 박기 어렵다. 신탁은 가능하다. 재혼 가정이나, 특정 혈통으로 재산을 잇고 싶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신탁을 권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셋이다. 첫째, 치매 등으로 판단력을 잃을 것에 대비해 생전 재산 관리까지 맡기고 싶을 때. 둘째, 자녀가 어리거나 재산 관리 능력이 걱정되어 "몇 살이 되면" "어떤 조건이면" 같은 단계를 두고 싶을 때. 셋째, 재혼 가정처럼 재산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유언이 '한 장의 지시서'라면, 신탁은 '움직이는 설계도'다.

4. 주의할 점 — 유류분과 비용

신탁도 만능은 아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할 수 있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신たく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유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 신탁은 설정·운용에 비용이 들고,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에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세 도구라기보다 '뜻을 지키는 도구'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장의 정리

신탁은 유언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채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본인이 이익을 누리고 사망 시 지정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기며, 치매 대비와 겸인 생략의 장점이 있다(신탁법 제59조). 수익자연속신탁은 2대·3대까지 미리 정할 수 있다(제60조). 다만 유류분과 충돌할 수 있고 비용·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서두의 어른신처럼, 유언만으로는 '살아 있는 동안의 관리'와 '여러 세대에 걸친 분배'를 담기 어렵다. 내 뜻을 시간과 조건까지 담아 지키고 싶다면, 신탁이 강력한 선택지가 된다.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설계와 유류분 검토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7

17장. 장애인 신탁 — 남겨질 아이를 위한 준비

—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다. 평생의 걱정은 하나였다. "우리가 떠난 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나."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아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고, 큰돈이 한 번에 가면 노려지거나 탕진될까 두려웠다. 또 재산이 생기면 받던 복지 혜택이 끊길까도 걱정이었다. 이 부모의 고민을 푸는 제도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비과세와 신탁이다.

장애인 가족의 상속·증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고민을 안는다. 재산을 남기되, 안전하게 관리되고, 복지와의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 세법과 신탁이 이를 돕는 장치를 두고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특별한 고민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모가 마주하는 걱정은 보통 셋이다. 첫째, 자녀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큰 재산이 한 번에 넘어가면 악용되거나 탕진될 위험. 셋째, 재산이 생기면서 받던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물려준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평생에 걸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장애인이 증여받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다

세법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비과세를 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그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

핵심은 '신탁을 통해'라는 조건이다.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은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장애인신탁 —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남겨질 장애 자녀의 평생 생계를 신탁으로 보호한다



[그림 17-1] 장애인신탁 비과세 구조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이 비과세에는 조건이 있다. 신탁의 이익이 장애인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정해진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요건을 어기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 설계 단계에서 요건을 정확히 맞추고, 장애인 본인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받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애인 보험금도 비과세된다

보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가 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즉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을 통해, 매년 일정액의 보험금을 세금 없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한 번에 큰돈을 주는 대신,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권하는 것은 '신탁과 보험의 결합'이다. 신탁(5억 한도 비과세)으로 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보험(연 4천만 원 비과세)으로 매년 생활 자금이 흐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풀린다. 재산은 신탁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큰돈이 한 번에 노출되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도움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설계된 대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안심을 얻는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그만큼 든든한 장치다.

이 장의 정리

장애인 가족의 상속·증여는 안전한 관리와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제52조의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제46조). 신탁으로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험으로 평생 생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결합 설계가 효과적이다. 다만 신탁은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내가 떠난 뒤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는 걱정은, 제도를 알면 구체적인 준비로 바꿀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이라면, 이 장치들을 활용한 설계를 한 번쯤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 장애인신탁·보험 결합 설계는 www.finitart.com 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8

18장. 이월과세 — 법인전환의 세금 장벽 넘기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 양도세 폭탄을 미루는 법

수십 년 키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사장이 있었다.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전환하려니 큰 벽이 나타났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 나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땅값이 크게 올랐던 탓이다. "아직 판 것도 아닌데 세금부터 내라니" 싶어 전환을 포기할 뻔했다. 이때 그를 구한 제도가 이월과세였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실제로 판 것도 아닌데 세금부터 나오면 전환 자체가 막힌다. 이 장벽을 넘게 해주는 것이 이월과세다.

1. 법인전환의 걸림돌 —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옮기는 것은 세법상 '양도'로 본다. 그래서 그동안 오른 가치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가업승계나 절세를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처럼 오래 보유해 가치가 크게 오른 자산이 있으면, 전환 단계에서 양도세가 발목을 잡는다. 서두의 사장이 마주한 벽이 바로 이것이다.

2. 이월과세란 — 세금을 '미루는' 제도

이월과세는 그 양도세를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에 미뤄주는 제도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도록 이월한다.

즉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전환 단계에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정산한다. 덕분에 당장의 세금 부담 없이 법인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림 18-1] 법인전환 이월과세 흐름

3.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월과세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전환 방식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자본금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사후 관리	5년 내 폐업·자산 처분 시 추정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이월과세는 사후 관리가 핵심이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미뤘던 양도소득세가 추정된다. 즉 "전환만 하고 곧 팔아치우는" 것은 막아둔 것이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도 일정 부분(75%) 감면받을 수 있어, 전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도를 쓰려면 전환 설계 단계부터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4. 이월과세는 '시작'일 뿐이다

이월과세로 법인 전환의 문턱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설계가 열린다. 가족 법인을 통한 지분 증여, 차등배당, 법인과 개인의 세 부담 비교 같은 전략이 이어진다(19~21장).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법인 전환은 '절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자산 관리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이월과세는 그 틀로 넘어가는 다리다. 다만 전환에는 비용과 사후 관리 부담이 따르고,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매출 규모, 자산 구성, 승계 계획에 따라 득실이 갈린다.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좋다"는 말은 경계해야 한다. 전환 전에 개인과 법인 두 경우의 세 부담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다(21장).

이 장의 정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걸림돌이 된다. 이월과세는 그 양도세를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로 미뤄준다(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 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5년 내 폐업·자산 처분 시 추정되므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도 받는다.

법인 전환은 기업승계의 틀을 바꾸는 큰 결정이다. 이월과세는 그 첫 관문을 넘게 해주지만,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검토와 득실 분석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19

19장. 가족법인 — 부를 옮기는 그릇, 그리고 함정

— 자녀를 주주로 세우면 절세가 될까

한 자산가가 컨설팅을 받고 가족법인을 세웠다. 자녀들을 주주로 넣어, 회사가 버는 돈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쌓이도록 한 것이다. "증여세 없이 부를 넘긴다"는 설명에 솔깃했다. 그런데 몇 년 뒤, 세무서에서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부모가 법인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이, 자녀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증여'로 잡힌 것이다. 가족법인은 잘 쓰면 강력한 도구지만, 함정을 모르면 오히려 세금을 부른다.

가족법인은 자녀 등 가족을 주주로 하는 법인이다. 회사를 통해 부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그릇'으로 쓰인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면밀히 감시한다. 이 장은 가족법인의 활용과 함정을 함께 다룬다.

1.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

가족법인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다. 자녀를 주주로 세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사업이나 투자로 돈을 벌면, 그 가치가 자녀 지분의 가치로 쌓인다. 부모의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도, 법인의 성장을 통해 부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여러 주주에게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고, 기업승계의 틀을 미리 마련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자주 검토하는 구조다. 문제는, 세법이 이 '자연스러운 이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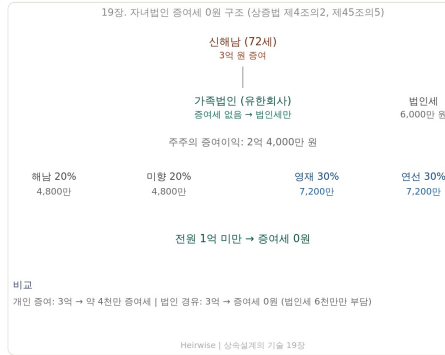
2. 특정법인의 함정 — 증여의제

세법은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부모가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증여로 본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특정법인)에,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그 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

서두의 자산가가 걸린 함정이 바로 이것이다. 부모가 법인에 일감·재산·이익을 무상이나 저가로 넘기면, 그 혜택이 자녀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법인을 거쳤으니 증여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림 19-1] 자녀법인 증여세 0원 구조

3. 2025년 개정 — 감시망이 넓어졌다

최근 개정으로 증여의제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2025. 3. 14. 개정으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에 불균등 감자, 차등배당 등으로 지배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가 명확히 포함되었다. 법인을 우회한 변칙 증여를 더 촘촘히 과세하려는 취지다.

즉 배당이나 감자 같은 자본 거래를 이용해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도 증여로 잡힐 수 있게 되었다(차등배당은 20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4. 그래도 가족법인이 유리한 경우

합정이 있다고 해서 가족법인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쓰면 여전히 강력하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가족법인이 이익을 내는 경우는 분명하다. 첫째, 사업 소득이 커서 개인 종합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9~24%)이 낮을 때. 둘째, 번 돈을 곧바로 빼지 않고 법인에 쌓아 재투자할 때. 셋째,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로 세워 법인의 성장과 함께 지분 가치가 자연히 커지도록 설계할 때. 핵심은 '정상적인 대가가 오가는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면 증여로 잡히지만, 자녀가 정당한 자본을 출자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에서 가족법인을 권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지분 구성과 거래의 정당성'이다. 자녀를 주주로 넣는 시점, 출자 자금의 출처(자녀 본인 자금인지), 부모와 법인 간 거래가 시가로 이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준다"는 막연한 기대로 접근하면 서두의 사례처럼 증여세를 맞는다. 가족법인은 절세 마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틀'이다.

이 장의 정리

가족법인은 자녀를 주주로 세워 법인의 성장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그릇이다. 그러나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보유한 특정법인에 부모가 이익을 분여하면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된다(제45조5). 2025년 개정으로 차등배당·불균등 감자 등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까지 감시망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소득 분산·재투자·승계 틀이라는 정당한 실익이 있으므로, 거래의 정당성을 갖춰 설계하면 유효한 도구가 된다.

가족법인은 강력하지만 위험도 큰 도구다. "만들면 절세된다"는 말만 믿고 움직이면 함정에 빠진다. 내 사업과 자산 구조에 가족법인이 맞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 가족법인 설계와 증여의제 위험 점검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0

20장. 차등배당 — 배당으로 부를 옮길 때의 경계선

—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다

가족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묘안을 떠올렸다.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그 몫까지 자녀 주주에게 몰아 배당하는 것이다. "내 돈을 안 받고 자식에게 주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초과 배당을 '증여'로 보았다. 아버지가 받을 배당을 자녀가 대신 받은 것이니, 사실상 부를 넘긴 것이라는 논리였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매겨졌다.

배당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받는다. 그런데 일부러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 한다. 이를 부의 이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많지만, 세법은 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두었다. 이 장은 그 경계를 다룬다.

1. 배당과 차등배당

정상적인 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한다. 30% 지분을 가진 주주는 전체 배당의 30%를 받는다. 차등배당은 이 비율을 벗어나, 일부 주주가 자기 지분보다 많거나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개 부모(대주주)가 자기 배당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그 몫을 자녀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쓰인다. 결보기에는 "내가 안 받고 자식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그 실질을 본다.

2. 초과배당은 증여다

지분을 초과해 받은 배당은 증여로 과세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배당을 할 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배당소득세 등을 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서두의 아버지가 걸린 지점이 이것이다. 자녀가 자기 지분보다 많이 받은 배당, 즉 아버지가 양보한 몫은 증여로 잡힌다. 다만 초과배당에는 이미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므로, 그 세금을 뺀 이익에 증여세를 매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차등배당 — 초과분은 증여로 본다

지분보다 많이 받은 배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분대로 배당보유 지분 비율대로
→ 정상 배당
과세 문제 없음**초과 배당 (차등)**지분보다 많이 수령
→ 초과분 증여 간주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조 · 관례

HEIRWISE · 상속실계의 기술 20장

[그림 20-1] 차등배당 과세 기준

3. 2025년 개정 — 더 촘촘해졌다

차등배당을 통한 변칙 증여는 최근 개정으로 더 분명히 과세된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2025. 3. 14. 개정으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제45조의5)에 차등배당·불균등 감자 등이 명확히 포함되었다. 초과배당 증여(제41조의2)와 더불어, 자본 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이종으로 촘촘히 감시하는 구조가 되었다.

즉 "배당을 통한 우회 증여"의 길은 과거보다 훨씬 좁아졌다. 차등배당을 절세 수단으로 단순하게 활용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차등배당을 검토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초과로 받은 금액이 증여로 과세된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를 따져 실제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배당이 일반 증여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 "배당으로 주면 세금이 적다"는 단순한 기대는 위험하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차등배당은 '만능 절세법'이 아니라 '제한적 도구'로 본다. 과거에는 부모 배당을 자녀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널리 쓰였지만, 개정으로 증여 과세가 명확해지면서 실익이 크게 줄었다. 지금은 차등배당 단독으로 부를 옮기기보다, 정상 배당·지분 설계·사전증여 등 여러 방법의 득실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 거래는 흔적이 남으므로, 사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 장의 정리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것으로, 대개 부모가 자기 몫을 자녀에게 몰아주는 데 쓰인다. 그러나 지분을 초과해 받은 배당은 증여로 과세된다(제41조의2). 2025년 개정으로 차등배당·불균등 감자가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에도 포함되어, 자본 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의 길이 크게 좁아졌다. 차등배당은 더 이상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며, 다른 방법과 득실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내가 안 받고 자식 주는 건데"라는 생각은 세법에서 통하지 않는다. 자본 거래로 부를 옮길 때는 그 하나하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움직이기 전에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 차등배당·배당 설계의 득실 분석은 www.finitart.com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1

21장. 법인 vs 개인 — 어느 그릇이 유리한가

— "법인 만들면 절세된다"는 말의 진실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법인이 무조건 절세"라는 말만 듣고 서둘러 법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번 돈을 생활비로 다 써야 하는 처지라, 법인에서 급여로 빼 쓰자 결국 소득세를 또 냈고, 법인 유지비용까지 더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 다른 한 명은 소득 규모와 자금 용도를 따져본 뒤, 일부는 개인으로 두고 일부만 법인화해 실익을 챙겼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를 따져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결과가 같았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또 세금이 붙는다. 이 장은 법인과 개인, 두 그릇의 득실을 비교한다.

1. 세율부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세율 구조다.

개인 (종합소득세)	6% ~ 45% (8단계 누진)
법인 (법인세)	9% (2억 이하) / 19% / 21% / 24% (3천억 초과)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천억 원 21%, 3천억 원 초과 24%의 4단계다. 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이른다. 소득이 클수록 법인세율이 개인 세율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긴다.

소득이 큰 사업자라면, 같은 이익이라도 법인으로 두면 당장의 세 부담이 낮다. 서두에서 둘째 사람이 일부를 법인화한 이유다.

개인과 법인, 두 그릇의 비교

어느 그릇이 유리한지는 규모·기간·목적에 따라 다르다

개인으로 보유·상속

상속세 최고 50%
구조 단순
즉시 과세

법인 활용

법인세 + 배당
지분으로 분산 이전
장기 설계 가능
※ 만능은 아님

상증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21장

[그림 21-1] 개인 vs 법인 비교

2. 그러나 '꺼내 쓸 때' 또 세금이 붙는다

법인의 돈은 곧바로 내 돈이 아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법인이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두 가지 길뿐이다.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다시 매겨진다. 즉 법인세를 한 번 내고, 꺼낼 때 또 내는 '이중과세' 구조다. 서두의 첫째 사람이 손해 본 이유가 이것이다. 번 돈을 다 꺼내 써야 하는 처지에서는 법인이 오히려 불리했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법인의 함정 몇 가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이중과세다. 법인세를 낸 뒤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또 과세된다. 둘째, 가지급금 문제다. 대표가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셋째, 청산 시 과세다. 법인을 정리할 때 쌓인 이익에 다시 세금이 붙는다. 넷째, 유지비용이 다. 회계·세무 신고 등 관리 부담이 개인보다 크다.

3. 법인이 유리한 경우, 개인이 나은 경우

결국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이다. 기준은 분명하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커서 법인세율이 개인 세율보다 낮고, 번 돈을 곧바로 빼지 않고 법인에 쌓아 재투자하며, 기업승계의 틀을 미리 마련하려는 때다. 반대로 개인이 나은 경우는, 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하며, 단순한 사업 구조를 선호할 때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번 돈을 곧바로 다 써야 하는가, 쌓아둘 수 있는가?" 쌓아둘 수 있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둘째, "소득 규모가 법인세율 이점을 누릴 만큼 큰가?" 셋째, "기업승계나 자산 관리의 틀이 필요한가?"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면 법인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하나라도 '아니다'라면 신중해야 한다. 법인은 '절세 도구'이기 전에 '운영해야 하는 조직'이다. 만들기는 쉬워도, 잘못 만들면 되돌리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이 장의 정리

법인과 개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다. 소득이 클수록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구간이 생긴다. 그러나 법인의 돈을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 가지급금, 청산 과세, 유지비용 같은 함정이 있다. 법인은 소득이 크고 재투자·승계가 필요할 때 유리하고, 소득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엔 개인이 나을 수 있다.

"법인이 무조건 절세"라는 말은 위험하다. 같은 사업도 소득 규모와 자금 용도에 따라 유리한 그릇이 다르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두 경우의 실제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다.

▶ 법인·개인 세 부담 비교와 전환 판단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PART 4

판례로 배우는 상속 — 법원이 답한 쟁점들

22장 상속인·대습 판례 · 23장 유류분·유언 판례 · 24장 분할·기여 판례

CHAPTER 22

22장. 상속인과 대습상속 — 법원이 답한 쟁점들

— 전원합의체가 바꾼 실무, 그리고 2026년 개정

빚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가 있었다.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얼마 뒤, 영문도 모르던 어린 손주들에게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자녀가 포기하자 그 빚이 손주에게 내려간 것이다. 결국 온 가족이 줄줄이 포기 신고를 해야 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수십 명이 법원을 드나들었다. 이런 부조리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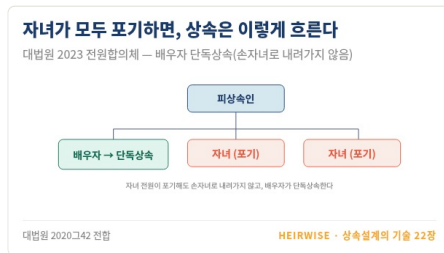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된다. 법원은 큰 사건마다 기준을 다시 세웠다. 최근 몇 년간 바뀐 핵심 판례와 2026년 개정을 정리한다.

1.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누가 상속하나

서두의 부조리, 즉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줄줄이 내려가던 문제를 대법원이 정리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면 그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 판례 전에는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 그다음 조부모까지 연쇄적으로 포기해야 했다. 빚 하나에 일가족 전체가 법원을 드나드는 일이 흔했다. 2023년 판례로 그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배우자까지 빚을 피하려면 손주의 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림 22-1] 전원 포기 시 상속 흐름

2. 제사는 누가 모시나 — 제사주재자

제사를 누가 주재하고 분묘 등을 승계하는지도 오래된 분쟁거리였다. 과거에는 장남 우선이었으나, 대법원이 기준을 바꿨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주제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장손) 우선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맞는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제사 문제를 넘는다. 분묘·제구의 승계, 유체·유골의 관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말던 시대가 끝나고, 협의와 실질을 우선하는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3.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 2026년 개정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가족에게도 상속이 가던 현실을, 2026년 개정이 바로잡았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는다. 시행 2026. 1. 1., 2026. 3. 17.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권을 잃는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는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효과 발생	당연 박탈	법원의 선고 필요
사유	살해·유언 방해 등	학대·부양의무 중대 위반
청구	불필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청구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자녀를 버린 부모가 그 자녀의 사망 시 상속을 받아가던 부조리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부양을 저버리거나 학대한 가족을 법원의 선고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패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 못 받는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누리는 길도 막혔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3조 개정(2026. 3. 17.)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의 대습상속권은 유지된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포기는 그 피상속인에 대한 포기일 뿐이다. 아버지의 빚을 포기 했더라도, 이후 할머니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열리면 그 상속은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한 번 포기로 다 끝났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또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2023년 판례로 부담이 줄긴 했어도 배우자·후 순위까지 누구에게 상속이 가는지 전체 지도를 그려보고 결정해야 한다. 한 사람의 포기가 예상 밖의 사람에게 빚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정리

최근 판례와 개정이 상속인의 지형을 바꿨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2023 전합 2020그42), 제사주재자는 협의·최근친 연장자 기준으로 정한다(2023 전합 2018다248626). 2026년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고(제1004조의2),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다(제1003조). 효도와 부양이라는 실질을 법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이다.

상속인 확정은 모든 상속의 출발점이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누구에게 상속이 가는지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분쟁과 빚의 전가를 막는 길이다.

▶ 상속인 확정과 포기·대습 검토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3

23장. 유류분과 유언 — 가족 갈등의 최전선

— 헌법재판소가 바꾼 유류분의 지형

평생 연락도 없던 형제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나타나 "내 유류분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다. 정작 부모를 모신 자녀는 황당했다. 얼굴도 안 비치던 형제가 법으로 보장된 몫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법은 "그래도 줘야 한다"고 답해왔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그 답을 바꿨다.

유류분과 유언은 상속 분쟁이 가장 자주 터지는 지점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이 영역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다.

1. 현재가 바꾼 유류분 —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전반을 심사해, 일부는 그대로 두고 일부는 깨뜨렸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①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위헌(즉시 효력 상실). ③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 ④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서두의 형제 사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 결정으로 곧바로 사라졌다. 이제 연락 없던 형제가 "법정 유류분"을 이유로 청구하는 일은 통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가지(패륜 상속인, 기여분)는 입법 개선이 필요해졌다.

2. 2026년 개정의 완성

입법 시한을 넘기며 한때 유류분 소송이 멈추기도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개정 민법은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 3. 17. 공포·시행되었다. 핵심은 셋이다. ①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 부족액을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정산한다. ② 기여분 보호: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상속권 상실자는 유류분도 받지 못한다.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이 쟁점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 4. 25. 즉시
기여분 보호·상속권 상실	2024. 4. 25. 이후 상속분 소급
가액반환 원칙	2026. 3. 17. 이후 상속분부터



[그림 23-1] 유류분 개정 적용 시점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으면 그 돈은 상속분의 정산이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다만 반환 형태가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쟁점이 생길 수 있고, 반환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세부 쟁점도 정리되는 추세다.

3. 유언이 무효가 되는 순간 — 증인 자격

힘들게 남긴 유언도 형식을 어기면 무효가 된다. 가장 흔한 함정이 증인 자격이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될 수 없다. 공정증서유언에는 결격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웠다가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좋은 마음으로 가족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화근이 되는 것이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적으로 유언 공증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증인이다. 유언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2명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급한 마음에 공증사무소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을 세우면, 뒷날 증인 결격을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작은 형식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는다. 그리고 유언을 남길 때는, 폐지된 형제자매 유류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배우자·자녀의 유류분을 함께 고려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장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제도를 손봤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고,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과 기여분 보호가 입법으로 완성되었다(2026년 개정). 가액반환 원칙도 도입되었으나 적용 시점이 쟁점마다 다르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언은 증인 자격 등 형식을 어기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류분과 유언은 가족이 가장 침해하게 부딪치는 지점이다. 최근 변화가 큰 만큼, 내 상황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이다.

▶ 유류분·유언 분쟁 대응과 적용 시점 확인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4

24장. 분할과 기여, 법원이 정한 공평의 기준

— 특별수익·기여분·분할을 둘러싼 판례

부모를 10년간 모신 딸이 있었다. 부모가 떠난 뒤, 멀리 살던 오빠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딸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그 보답으로 받은 집도 있다"며 맞섰다. 오빠는 "그 집도 미리 받은 거니 네 몫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다툼의 답은 감정이 아니라, 법원이 오랜 판례로 세운 기준에 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국 "무엇이 공평한가"의 문제다. 미리 받은 사람, 더 기여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법원은 판례로 기준을 세워왔다. 분할의 실재를 판례로 살펴본다.

1. 미리 받은 것은 어디까지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는 "언제, 얼마까지" 산입하느냐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의 기초로 산입한다. 수십 년 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의 것이면 계산에 들어온다.

따라서 "오래전 받은 것이라 상관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의 부양이나 소액 지원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는다. 혼인·독립자금, 주택, 사업자금처럼 분명한 재산 이전이 대상이다. 서두 오빠의 "미리 받은 집은 빼야 한다"는 주장은, 그 집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2. '특별한' 기여라야 인정된다 — 기여분

부모를 모시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사람에게는 기여분을 더해준다. 그러나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을 참작해 정한다.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서두의 딸이 마주한 벽이 이것이다. 10년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특별한' 기여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여한 사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년 판결).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상속분에서 깎이는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판례가 서두의 딸에게는 결정적이다. 부모를 모신 보답으로 받은 집이 '기여의 대가'로 인정되면, 오빠의 주장처럼 특별수익으로 깎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4-1] 분할의 두 축

3. 나눈 뒤에는 — 분할의 효력

분할이 끝나면 그 효과는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속 설계 TIP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13조(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눈다(제269조 준용).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적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입증 싸움이다. 누가 무엇을 미리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승패를 가른다. 생전 증여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기여는 간병·비용 부담 내역으로 남겨야 한다. 더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그 뜻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서두의 딸처럼 사후에 다투면 입증의 부담이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오지만, 부모가 생전에 "이 집은 너의 기여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두면 다툼 일이 줄어든다.

이 장의 정리

분할은 공평을 맞추는 과정이다. 특별수익은 시기를 묻지 않고 산입되며(95다17885), 기여분은 통상을 넘어서 '특별한' 기여라야 인정된다(97므513). 최근 판례는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기여자를 보호한다(2022년 판결).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제1015조). 결국 핵심은 입증이다.

서두의 남매처럼,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가 먼저 받았고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맞서면 끝이 없지만, 판례 기준과 증거로 정리하면 길이 보인다.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내 특별수익·기여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 특별수익·기여분 입증과 분할 전략은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PART 5

실전 — 계산하고, 시작하고, 남긴다

25장 5단계 프로세스 · 26장 종합 계산 사례 · 27장 상속 계산기

28장 핵심 10가지 · 29장 지금 시작하기 · 30장 남겨진 가족 안내

CHAPTER 25

25장. 상속 설계 5단계 프로세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 것인가

상속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자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세금부터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작 아버지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세금 계산은 그 모든 것이 정해진 뒤에야 가능하다. 순서를 건너뛰면 길을 잃는다. 반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가족은,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상속의 큰 그림은 잡혔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장이다. 상속 설계는 다섯 단계로 움직인다.

1단계. 현황 파악

먼저 무엇이 있는지 안다. 재산과 빚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피상속인의 금융·부동산·세금·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이때 숨은 보증채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정한다. 혼인외 자녀, 양자 등 예상 밖의 상속인이 드러날 수 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사유(제1004조의2)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비로소 몫을 나눌 수 있다.

3단계. 상속분 산정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해 특별수익을 빼고 기여분을 더해 구체적 상속분을 구한다. 그다음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누가 미리 받았고 누가 기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몫이 달라진다(5장·6장).

4단계. 세금 시뮬레이션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한다. 사전증여 합산(10년), 배우자공제 활용, 그리고 그 세금을 낼 재산까지 함께 본다. 서두의 자녀가 건너뛰려 했던 단계가 바로 여기인데, 1~3단계가 끝나야 제대로 계산된다.

5단계. 실행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다. 분할 비율은 세금과 다음 상속(2차 상속)까지 내다보고 정한다. 실행 단계에서 서두르면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배우자공제를 놓치기 쉽다.

상속 설계 5단계 프로세스

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단계로 나눈다

1 현황 진단 가족·재산·채무**2 상속인·재산 확정** 상속분·고유재산**3 세금 시뮬레이션** 예상 상속세**4 절세·이전 설계** 증여·보험·신탁**5 실행·사후관리** 신고·납부·점검

HeirWise 상속 설계 프로세스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25장

[그림 25-1] 상속 설계 5단계 프로세스

1 현황 파악	재산·채무 전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6개월)
2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상속결격·상실 점검
3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본문 4~6장
4 세금 시뮬레이션	과세가액·공제·재원	본문 10~15장
5 실행	협의분할·신고·납부	상속세 신고 6개월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를 건너뛰는 것이다. 서두의 자녀처럼 세금부터 걱정하다 상속인 확정을 놓치거나, 분할을 서두르다 유류분을 침해해 분쟁을 부른다. 1단계부터 차례로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끝나야 제대로 된다. 그리고 이 다섯 단계는 사망 후뿐 아니라, 생전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강할 때 1~4단계를 미리 점검해 두면, 막상 상속이 열렸을 때 가족이 헤매지 않는다.

이 장의 정리

상속 설계는 현황 파악 → 상속인 확정 → 상속분 산정 → 세금 시뮬레이션 → 실행의 다섯 단계다.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며, 상속분과 유류분을 점검하고, 세금과 재원을 계산한 뒤, 6개월 내에 분할·신고·납부를 마친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밟으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1단계 현황 파악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이다.

▶ 5단계 설계와 단계별 실행 지원은 www.finitart.com 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6

26장. 종합 계산 사례 — 신해남 가족의 상속

— 흠어진 조각을 하나로 맞춰보기

지금까지 법정상속분, 유류분, 상속세, 재원을 따로따로 배웠다. 그런데 실제 상속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얹혀 돌아간다. 하나만 잘못 짚어도 전체가 틀어진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한 가족의 사례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춰본다. 신해남 가족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모든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1. 가족과 재산

신해남(72세)이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 허미향(68세), 아들 영재(45세), 딸 연선(42세)이다. 재산은 빌딩·아파트·금융 합계 35억 원, 채무·장례비 1억 원으로 가정한다.

2. 1단계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이다. 비율은 1.5 : 1 : 1이다.

배우자 허미향	1.5	15억 원
아들 영재	1	10억 원
딸 연선	1	10억 원

(채무·장례비를 고려한 순재산 기준으로 배분하며, 여기서는 이해를 위해 35억을 3.5로 나눈 값으로 표시한다.)

3. 2단계 — 유류분 점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 없다면 유류분 침해는 없다. 만약 신해남이 "전 재산을 아들에게"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배우자와 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 경우 허미향은 7.5억, 연선은 5억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6장).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으므로, 신해남의 형제는 청구할 수 없다.

4. 3단계 — 상속세 계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 허미향이 생존해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34억 원	35억 - 1억
상속공제	-17억 원	일괄 5 + 배우자 10 + 금융 2
과세표준	17억 원	34억 - 17억
산출세액	5.2억 원	17억 × 40% - 1.6억
신고세액공제	-1,560만 원	3%
납부세액	약 5억 440만 원	—

신해남 가족 상속, 한눈에 보기

배우자 허미향 + 자녀 영재·연선 · 현행 상속법(2026) 종합 계산

총 상속재산 35억 원

— **상속공제 18억** 일괄 5억 + 배우자 13억

= 과세표준 17억 원

× **세율 40% - 누진공제 1.6억** → **산출세액 5.2억**

— **신고세액공제 3% 1,560만 원**

= 납부세액 약 5억 440만 원

상증법 제13·18~26·69조 (2026 기준)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26장

[그림 26-1] 신해남 가족 종합 계산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한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을 적게 받아 공제가 5억으로 줄면, 과세표준은 22억으로 늘고 세금은 7억을 넘는다. 분할 설계가 곧 절세 설계인 이유다(9장).

5.4단계 — 납세 자원

예상 상속세 약 5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재산이 빌딩·아파트 중심이라면, 미리 준비한 사망보험금으로 납부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15장). 자원이 없으면 건물을 급매하거나 물납해야 해 손해를 본다.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적으로 이 사례의 교훈은 셋이다. 첫째, 배우자공제를 충분히 받도록 분할을 설계하면 세금이 크게 준다. 둘째, 세금 낼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두면 급매를 피한다. 셋째,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2차 상속(허미향 사망 시)에서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1차와 2차를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해야 한다. 분할·재원·2차 상속,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종합 설계의 핵심이다.

이 장의 정리

신해남 가족 사례로 전체 흐름을 묶었다. 법정상속분(1.5:1:1)을 출발점으로 유류분 침해를 점검하고, 상속세 약 5억 원을 계산했으며, 그 재원을 보험으로 준비하는 그림을 그렸다. 분할 설계로 세금을 줄이고, 재원 준비로 부동산을 지키며, 2차 상속까지 내다보는 것이 종합 설계의 목표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면, 상속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할 수 있는 일'로 바뀐다. 내 가족의 숫자로 이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 내 가족의 종합 시뮬레이션은 www.finitart.com 계산기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해 보기**

QR을 스캔하면 상속분·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www.finitart.com/calculator.html

CHAPTER 27

27장. 상속 계산기

— finitart.com 온라인 계산기 안내

Heirwise 온라인 계산기(finitart.com)에서 상속세,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적용 법령 기준일: 2026.04.22.

2026년 주요 변경 반영 사항: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현재 2024.4.25.),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상속권 상실제도 신설(민법 개정 2026.3.17. 시행). 상속세 세율·공제는 종전과 동일(최고 50%·5단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하며, 40% 인하·자녀공제 5억 안은 미통과·미시행이다.

finitart.com에 접속하여 계산기를 직접 사용해보세요. ▶ 영상 → 유튜브 [신대식의 상속수업] | 상담 → finitart.com

면책 문구

이 책은 상속·증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설계 상담: Heirwise (finitart.com) | 저자: Syn Dae Sik (AFPK 재무설계사)

www.finitart.com 상속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해 보기

QR을 스캔하면 상속분·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www.finitart.com/calculator.html

CHAPTER 28

28장. 상속, 이것만은 꼭 — 핵심 10가지

—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길게 읽었다면 이제 압축할 차례다. 상속·증여 설계에서 반드시 기억할 열 가지를 정리한다. 복잡한 법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 한 장의 원칙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든 길을 잃지 않는다.

1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된다	민법 제997조
2	배우자는 늘 상속인이며 자녀의 1.5배를 받는다	제1003·1009조
3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2003다29463
4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유족연금은 받는다	제1019조 등
5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대법원 2023 전합
6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다	헌재 2024.4.25.
7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	일괄 5억 + 배우자 5억
8	유류분은 가액(금전)으로 반환한다	2026 개정 제1115조
9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2026 개정
10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상증법 제13조

상속, 이것만은 꼭 — 핵심 10가지

이 책 전체를 한 장으로

- 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 ② 상속인·순위를 먼저 확인하라
- ③ 보험금·연금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④ 배우자공제로 면세점이 크게 올라간다
- ⑤ 사건증여는 10년 단위로 설계하라
- ⑥ 유언은 방식을 아끼면 무효다
- ⑦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
- ⑧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하라
- ⑨ 상속세 낼 '현금'을 미리 마련하라
- ⑩ 늦기 전에 가족과 대화하라

본서 요약

HEIRWISE · 상속설계의 기술 28장

[그림 28-1] 핵심 10가지

이 열 가지는 각각 한 개의 장에서 다룬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한 것이다. 1~5번은 '누가 무엇을 받는가'에 관한 민법의 원칙이고, 6~9번은 최근 바뀐 핵심 변화이며, 10번은 절세의 출발점이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7번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한때 '자녀공제 5억' 등 공제 확대안이 논의됐으나, 2026년 6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이며, 둘을 합쳐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뿐이라 문턱이 확 낮아진다. 개편안과 현행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적으로 이 열 가지를 한 장으로 출력해 두면 어떤 상담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다만 숫자(공제·세율)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을 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숫자는 변한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중 내 상황과 직접 닿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점검해야 할 지점이다.

이 장의 정리

상속의 핵심은 열 가지로 압축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배우자는 늘 상속인이며, 보험금·유족 연금은 고유재산이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됐으며,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 유류분은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고, 기여 대가 증여는 특별 수익에서 빠지며,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야 합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은 그대로, 숫자는 늘 확인하라.

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 상속이라는 복잡한 일 앞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닿는 항목이 보인다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하면 된다.

▶ 상속·증여 설계 상담은 www.finitart.com 에서 이어집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29

29장. 지금 시작하는 상속 설계

—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며 상속 설계를 미루던 분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떠났다. 남은 가족은 고인의 뜻을 짐작만 할 뿐, 확인할 길이 없었다. 더 줄 수 있었던 절세도, 막을 수 있었던 다름도 모두 놓쳤다.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 후회는 너무 흔하고, 너무 늦게 찾아온다.

상속 설계를 미루는 이유는 비슷하다. 아직 건강하고, 바쁘고, 생각하기 불편하다. 그러나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슬픔 위에 분쟁과 세금까지 없느냐 아니냐로 갈린다.

1. 미루면 잃는 것

설계를 미루면 세 가지를 잃는다.

첫째, 판단력이다. 건강할 때라야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는 유언도, 증여도, 신탁도 하기 어렵다. 서두의 분이 잃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시간이다.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빠지고(11장), 보험은 미리 들어야 재원이 된다(15장). 시간이 만드는 절세 효과는, 시간이 없으면 사라진다.

셋째, 선택지다. 임종이 임박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일찍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늦을수록 줄어든다. 상속 설계의 가치는 대부분 '시간'에서 나온다.

2. 생전에 준비하는 세 가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셋이다. 뜻을 남기고, 재원을 만들고, 미리 나누는 것이다.



[그림 29-1] 생전 준비 세 가지

첫째, 뜻을 남긴다. 유언이나 신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분명히 한다(7장·16장). 둘째, 재원을 만든다. 보험으로 상속세 낼 현금을 미리 준비해 부동산을 지킨다(15장). 셋째, 미리 나누

다. 증여공제와 10년 합산을 활용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앞당긴다(11장·13장).

뜻을 남긴다	유언·유언대용신탁	7장·16장
재원을 만든다	중신보험	15장
미리 나누는	사전증여·증여공제	11장·13장

상속 설계 TIP — 실천

실무적으로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다. 그럴 때는 5단계 프로세스(25장)대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을 한눈에 보고, 예상 세액을 계산기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계획으로 바뀐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오늘 재산 목록 한 장을 적는 것, 그것이 이미 설계의 시작이다.

3.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재산 목록을 적어 본다. 가족과 한번 대화한다. 유언의 형식을 알아본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확인한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계약 구조를 점검한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켜지는 설계'가 된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건강할 때 사전증여와 보험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흔한 함정이다.

이 장의 정리

상속 설계의 가장 큰 적은 '미루기'다. 미루면 판단력·시간·선택지를 잃는다. 생전에 준비할 것은 셋이다. 뜻을 남기고(유언·신탁), 재원을 만들고(보험), 미리 나누는 것(증여)이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서두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은 단순하다. 바로 지금,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첫 단추를 함께 끼우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 상속 설계의 첫걸음은 www.finitart.com 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CHAPTER 30

30장. 남겨진 가족을 위한 안내

— 사망 직후, 무엇보다 할 것인가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한 가족이 있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밀려왔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중요한 기간들이 흘러갔다. 승인·포기 기간을 놓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았고, 상속세 신고가 늦어 가산세를 물었다. 누군가 곁에서 "지금부터, 그다음은 저것"이라고 알려주었다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이 장은 남겨진 가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사망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자, 가장 현실적인 안내다.

1.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다

상속에는 기한이 정해진 일이 많다. 슬픔 속에서도 이 기간만큼은 챙겨야 한다.

즉시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초기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6개월 이내
초기	상속 승인·포기 결정	안 날부터 3개월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



[그림 30-1] 사망 직후 기간별 할 일

가장 위험한 것이 승인·포기의 3개월이다. 빚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빚을 떠안는다(8장). 서두의 가족이 빠진 함정이 이것이다. 재산보다 빚이 의심되면, 우선 상속재산에 손대지 말고 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사망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숨은 보증채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서두의 가족이 가산세를 문 것도 이 기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2. 받아도 되는 돈, 손대면 안 되는 돈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 등은 고유재산이라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3장).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빛이 의심되는 동안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받아도 되는 돈"과 "손대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하는 것이, 슬픔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다.

3. 분쟁을 줄이는 자세

유산을 둘러싼 다툼의 뿌리는 금액보다 '서운함'인 경우가 많다.

상속 설계 TIP — 실전

실무적으로 분쟁이 적은 가족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보를 숨기지 않고,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며, 분할 이유를 대화로 나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통장을 쥐고 침묵하면 의심이 자란다. 반대로 모든 상속인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 법으로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이 풀린다. 기록을 남기고, 대화를 먼저 하라. 그리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4. 마지막

상속 설계는 결국 숫자나 법이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만으로 충분히 힘든 시간에, 다투지 않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두는 일이다. 잘 준비된 상속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는 배려다.

이 책이 다른 30개의 주제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떠난 뒤에도 다투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상속 설계의 전부다. 이 책이 그 길의 작은 안내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 장의 정리

남겨진 가족이 먼저 행길 것은 기간이다. 사망신고(1개월), 안심상속 원스톱(6개월), 승인·포기(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유족연금도 받아도 되지만, 빚이 의심되면 상속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잘 준비된 상속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배려다.

서두의 가족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사망 직후의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힘이 된다. 막막한 순간, 곁에서 길을 함께 짚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사망 직후 상속 절차 안내는 www.finitart.com 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 1:1 무료 상속 상담을 신청하세요.

www.finitart.com/consult.html

부 록 · APPENDIX

바로 쓰는 자료

A 상속 설계 체크리스트 · B 세울표·공제한도 · C 법령 개정 연표
D 핵심 용어집 · E 상담 준비 양식

APPENDIX A

부록 A. 상속 설계 체크리스트

— 단계별로 빠짐없이 점검하기

상속 설계는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생전 준비, 사망 직후, 신고·납부의 세 국면으로 나누어 점검표를 정리한다. 항목 앞의 칸에 표시하며 확인한다.

1. 생전 준비 (자산을 가진 분)

☐	재산·채무 목록을 작성했는가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았는가
☐	세금 낼 자원(보험 등)을 준비했는가
☐	유언 또는 신탁으로 뜻을 남겼는가
☐	사전증여 계획을 세웠는가(10년 기준)
☐	보험 수익자를 확인·지정했는가
☐	가족과 한 번 이상 대화했는가

2. 사망 직후 (남겨진 가족)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6개월 이내
☐	재산·채무 전체 파악	—
☐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기	—

3. 분할·신고·납부

☐	상속인 전원 협의분할서 작성	—
☐	배우자 상속분(공제) 검토	—
☐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
☐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
☐	부동산 등 상속등기	—

상속 설계 TIP — 실천

이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인쇄해 냉장고나 서류함에 붙여두기를 권한다. 생전 준비 항목은 자산을 가진 분이, 사망 직후·신고 항목은 가족이 사용한다. 모든 칸에 표시가 차면, 큰 실수는 거의 피한 것이다.

▶ 단계별 상담은 www.finitart.com 에서 이어집니다.

APPENDIX B

부록 B. 세율표·공제한도 총정리

적용 법령 기준일: 2026.04.22.

▶ 정확한 세액은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finitart.com

B-1. 상속세·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현행법 (상증법 제26조, 2026.01.01. 시행 기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B-2. 상속공제 주요 항목 (상증법 제18조~제24조)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상증법 제20조 · 현행 (미성년자 공제는 별도)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 - 현재 나이)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 원	65세 이상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와 별도 추가 가능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택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분 기준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2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동거주택공제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기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10년/20년/30년 이상 영위 기준

공제 조합 예시 (2026년 기준)

배우자 + 자녀 2명	2명	기초 2억 + 자녀 10억 + 배우자 5억 = 17억 원
배우자 + 자녀 3명	3명	기초 2억 + 자녀 15억 + 배우자 5억 = 22억 원
자녀만 (배우자 없음)	2명	일괄공제 5억 (∵ 기초2+자녀10=12 > 5이므로 개별 공제 선택) = 12억 원
배우자만 (자녀 없음)	—	기초 2억 + 배우자 5억 = 7억 원

B-3.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B-4.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민법 제1112조, 2026.03.17. 기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2024.4.25. 현재 위헌 → 삭제

주요 개정 사항 (2026.03.17. 시행)

- ▶ **반환 방법 변경:** 원물반환 → **가액(금전)반환 원칙** (제1115조 개정)
- ▶ **기여분 보호:** 특별한 부양·기여 대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제1008조 단서)
- ▶ **상속권 상실 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당연 소멸 (제1004조의2)
- ▶ **대습상속 제한:** 상속결격·상속권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제1003조)

B-5. 법인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B-6.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

원칙	최대주주 보유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 (중소기업 등 예외)
현행 (2026.06. 기준)	20% 할증 유지 — 폐지 개정안 미통과

B-7. 특정법인 증여의제 기준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정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
비과세 기준	주주별 증여이익 1억 원 미만 → 증여 불인정
적정 이자율	연 4.6%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면책 문구: 위 세율·공제·법률 정보는 2026.04.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정 및 상속 설계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상담 신청: finitart.com | 저자: Syn Dae Sik (AFPK | RC)

APPENDIX C

부록 C. 법령 개정 연표 (2024~2026)

— 최근 무엇이 바뀌었나, 한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상속 관련 법령이 크게 움직였다. 유류분과 상속권 제도가 특히 많이 바뀌었다. 적용 시점이 쟁점마다 다르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민법 (상속·유류분)

2024. 4. 25.	현재 2020헌가4: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즉시), 유류분상실·기여분 미반영 헌법불합치
2024. 9. 20.	민법 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삭제
2025. 1. 31.	위 개정 시행
2026. 1. 1.	구하라법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시행
2026. 2. 12.	유류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3. 17.	유류분 개정 공포·시행

2. 2026. 3. 17. 유류분 개정의 핵심

가액반환 원칙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제1115조)	2026. 3. 17. 이후 상속
기여분 보호	기여 대가 증여는 유류분 반환 제외	2024. 4. 25. 이후 소급
상속권 상실 확대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2024. 4. 25. 이후 소급
대습 제한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 대습 불가(제1003조)	2026. 3. 17.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율	10~50% 5단계 (현행 유지) — 40% 인하 개정안 미통과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현행 유지) — 5억 확대 개정안 미통과
일괄공제	5억 원 유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때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유지
10% 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현행 유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 할증 유지 (폐지 개정안 미통과)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추가 (2024 시행, 현행)
유산취득세 전환	입법예고(2025)만, 미시행 — 통과 시 2028년 예정

상속 설계 TIP — 세금 체크

2025년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최고세율 50%→40% 인하, 자녀공제 5,000만 원→5억 원 상향, 10% 구간 확대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도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통과 시 2028년 예정). 모든 설계는 시행 중인 현행 법(최고 50%·5단계,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최신 법령 반영 계산은 www.finitart.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ENDIX D

부록 D. 핵심 용어집

— 헛갈리는 상속·증여 용어 정리

상속과 증여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가 많다. 본문에서 자주 나온 핵심 용어를 모아 간단히 정리한다.

1. 상속의 기본

피상속인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개시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
법정상속분	법이 정한 상속 비율 (배우자는 5할 가산)
대습상속	상속인이 먼저 사망·결격 시 그 자녀가 대신 상속

2. 분할과 조정

특별수익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유증 (상속분에서 차감)
기여분	특별히 부양·기여한 몫 (상속분에 가산)
유류분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 (법정상속분의 1/2 등)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
소급효	분할 효과가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

3. 승인과 포기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
고유재산	보험금·유족연금 등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본인의 재산

4. 세금과 법인

과세가액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
일괄공제	상속세에서 빼주는 5억 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 증여를 합산하는 것
이월과세	법인전환 시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루는 것
특정법인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보유한 법인

▶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www.finitart.com 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APPENDIX E

부록 E. 상담 준비 양식

— 상담 전에 채워두면 시간을 아낀다

상속·증여 상담은 정보가 정확할수록 빠르고 깊어진다. 상담 전에 아래 양식을 채워두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설계를 받을 수 있다. 빈칸에 직접 적어 활용한다.

1. 가족 관계

본인(피상속인 예정)	성명 / 나이 / 건강
배우자	유 · 무 / 나이
자녀	인원 / 나이 / 혼인 여부
기타 상속인	손주 · 부모 · 형제 등
특이사항	재혼·입양·장애·해외 거주 등

2. 재산 현황

부동산	주택·상가·토지 / 예상 시가
금융자산	예금·주식·펀드 / 금액
보험	종류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사업체·법인	지분 / 형태
기타	차량·귀금속 등

3. 채무와 증여 이력

채무	대출·보증 등 / 금액
과거 증여	누구에게 / 언제 / 얼마(10년 내 중요)
장례·기타	예상 비용

4. 희망 사항

분배 의향	누구에게 무엇을 / 비율
우려 사항	분쟁·세금·특정 가족 보호 등
우선순위	절세 / 분쟁예방 / 특정인 보호 등

상속 설계 TIP — 실전

모든 칸을 완벽히 채울 필요는 없다. 아는 만큼만 적어도 충분하다. 특히 '과거 증여 이력'과 '보험 계약 구조(계약자·수익자)'는 세금에 큰 영향을 주므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진다.

▶ 작성한 양식으로 www.finitart.com 에서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HeirWise

상속 · 증여 · 부의 이전 설계

www.finitart.com

문의 itart@finitart.com | 010-2088-538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 30번길 2, 2층

※ 본 책자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세액·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설계의 기술

상속 사용 설명서

발행일	2026년 6월 15일 · 초판 1쇄
지은이	신대식 (Syn Dae Sik · 申大湜)
펴낸곳	HeirWise · www.finitart.com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30번길 2, 2층 858호
문의	itart@finitart.com · 010-2088-5383

[지은이] 신대식 — AFPK·RC. 법학을 전공하고 보험·자산관리 현장을 거쳐 상속·증여·자산 이전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와 산업안전기사(예정), AI·데이터분석 이력을 더해, 법률·세무·현장안전관리 리스크를 데이터 기반으로 아우르는 관점으로 상속 등을 설계한다. 현재 한국재무설계(주)에서 상속 전문 재무설계사로 일하며 'HeirWise'와 '신대식의 상속수업'을 운영한다.

© 2026 신대식(Syn Dae Sik). 이 책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전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서의 세법·법령 정보는 발행일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 시행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 매 품 · NOT FOR SALE

◇ 신 대 식 의 상 속 수 업 ◇

상속은 아는 만큼 지킨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부터 상속세 절세, 보험·신탁·가족법인까지 — 30개 장과 핵심 도해, 실전 계산 사례로 '상속 사용법'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가족이 겪을 일을 미리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



상속세 계산기 · 무료 상담

QR을 스캔하거나 접속하세요

www.finitart.com

HeirWise · 신대식(Syn Dae Sik) · AFPK | RC

itart@finitart.com · 010-2088-538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30번길 2, 2층

HEIRWISE

비매품